

발행인 : 서 울 특 별 시 장 편집인 : 홍 보 기 획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 731-6112



	기관의장
선	
람	

제2890호 2009. 2. 5.(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٨	자	밉멉	П

[훈 령]

제954호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D-2일 편집 및 교정

D-1일 인쇄 및 수송

D일 보급

-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입법예고]
제2009-17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1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제2009-19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2
제2009-230호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2
1,000 2000 F FE FE F F O (2.3) O F F O E O H E E F H (E) H I H
◈고 시
제200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24
제2009-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제2009-38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29
제2009-39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33
제2009-40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도면42
제2009-41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47
제2009-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48
제2009-43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50
제2009-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54
제2009-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유수지,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공고
제2009-1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57
제2009-1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57
제2009-187호「서울형 어린이집」공인 신청58
제2009-19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59
제2009-2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61
◈구고시
제2009-5호 신당7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지정의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중구) 75
제200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광진구)78
제200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성북구)82
제200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성북구) ······82
제200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강서구)85
제200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강서구)91
제2009-2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구)102
제2009-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관악구)102
제2009-11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강남구)103
제2009-8호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송파구)104
◈ 구공고
제2009-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종로구)107

115117119
128
131
131
132
140
141
141
145
145
145
146
146

자 치 법 규

[훈 령]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엔~ 2009년 2월 5일

◆ 서울특별시훈령 제954호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상근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정수와 필요한 기준 및 채용절차 등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용"이란 상근인력이 서울특별시(이 하"시"라 한다) 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2. "사용부서"란 상근인력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 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직속기 관·사업소는 본청에 준하는 부서를 말 한다.
- 3. "상근인력"이란 연간 250일 이상 근무 하는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

경찰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 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상근인력 중 청원경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②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250 일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운용 할 수 없다.
-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④ 이 규정은 상근인력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 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상근인력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1. 단순노무원: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안내,전화 민원상담 등 단순 잡역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
-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 리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
- 3. 환경미화원: 도로·가로청소, 쓰레기페 기물 수거·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수 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 하는 상근인력
- 4.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 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
- ② 제1항제1호의 단순노무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 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정규직공무원 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 제5조(정수책정요구) 사용부서가 새로운 상 근인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근인력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 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수책정승인)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로부터 상근인력정수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근인력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력운영과·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 ② 예산담당관은 상근인력정수책정승인서 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 담당관·인력운영과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 다.
- 제7조(정수의 총수) ① 서울특별시의 상근인 력의 정수는 총905명으로 한다.
 - ② 부서별·직종별 상근인력의 정수는 별표 와 같다.
- 제8조(정수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상근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상근인력의 정수책정승인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
 - 2. 상근인력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감한다
 -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 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감한다
 - 4. 행정사무보조인력에 고용된 자가 채용이 해지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감한다
 - 5.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상근인 력의 정수는 감한다.
- 제9조(채용) ①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 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 여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채용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원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력서 1통
- 2.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에 한 함)
- 4. 자격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사용부서는 신원조사결과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용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상근인력을 채용한 사용 부서는 그 내용을 즉시 조직담당관·인력 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운영과에 서는 채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 결하여야 한다.
- 제10조(복무) ① 상근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의 휴가에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 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사용부서 및 직종별 주관부서에서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급여지급) 급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서울특별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상 근인력의 근무상한 연령은 58세 이내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되 담당업 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계약을 할 때에 근 무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제13조(채용해지) 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을 해지하는 때에는 인력운영과·조직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 3.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
 - 5.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6.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감축이 필요한 때
 - 7.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 제14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인력운영과는 제3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 2. 상근인력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3. 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신분증 등) ① 상근인력에 대하여 별 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용부서에서는 신분증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력운영과에서 서울특별시 증명용 철인을 압인한 후 신분증을 발급 하되, 발급번호는 사용부서별로 따로 부여 한다.

- ③ 상근인력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 분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사용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상근인 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의 발 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는 상근인 력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 10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② 상근인력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는 상근인력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에서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는 인 원을 정수에 포함하고, 도로보수원의 신축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 해 도로교통사업소별 정수를 도로관 리담당관으로 통합 운영하며, 한강교 량 방호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교량 방호인력(청원경찰)의 소속기관 을 변경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총인원 905명의 범위내에서 기관 별로 정수를 조정함(안 제7조 및 별표)
 - 도로관리담당관의 단순노무원(현 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5명 증원(0명 → 5명)
 -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순노무원(단 순잡역조무인부) 1명 증원 (7명 → 8명)
 - 나. 도로보수원의 정수를 총 124명에 서 결원발생으로 인해 6명을 감 축하고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정수 를 이관함
 - 도로관리담당관의 도로보수원
 118명 증원(0명→118명)
 - 동부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16명 감축(16명→0명)
 -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25명 감축(25명→0명)
 - 남부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23명 감축(23명→0명)
 - 북부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20명 감축(20명→0명)
 - 성동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22명 감축(22명→0명)
 - 강서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보수
 원 18명 감축(18명→0명)
 - 다. 한강교량 방호업무 소관부서 변 경에 따라 청원경찰 소속부서를 조정함
 - 도로행정담당관의 청원경찰 정수 9명 감축(95명→86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원경찰 정수 9명 증원(0명→9명)

[별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25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소계	시설물 · 장비 유지관리 인부	현장공사 ·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 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도 로 보수원	환 경
총계	353	148	135	5		8	118	87
본청소계	123	5		5			118	
도로관리 담당관	123	5		5			118	
사 업 소 소 계	230	143	135			8		87
상 수 도 사업본부	8	8				8		
녹지사업소	31	31	31					
남 산 공 원 관리사업소	26	26	26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15	15	15					
한강사업본부	123	63	63					60
중 랑 물재생센터	22							22
난 지 물재생센터	5							5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계	경비 청원경찰 -	단속감시	청원경찰
구 시 힐	계 552	경비 경천경설	소계	과적차량
총 계	552	552		
본 청 소 계	150	150		
총 무 과	64	64		
도로행정담당관	86	86		
직속기관 소계	19	19		
보건환경연구원	6	6		
서울종합방재센터	9	9		
소 방 학 교	4	4		
사 업 소 소 계	382	382		
도시기반시설본부	9	9		
상수도사업본부	103	103		
데이터센터	3	3		
시립어린이병원	3	3		
시립서북병원	4	4		
시립은평병원	2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45		
시 립 미 술 관	3	3		
녹 지 사 업 소	2	2		
남산공원관리사업소	3	3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19	19		
교통방송	6	6		
한 강 사 업 본 부	164	164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9		
의 회 사 무 처 소 계	1	1		
의 회 사 무 처	1	1		

[별지 제1호서식]

	Ą	남 근 인 력 정 수	책 정 요 구 서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A) 17 - 17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고
업무량					
채용기간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	·기초
소요예산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근인력 정수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직종별 :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

]2호서식 	J			
			상 근 인 력 정	성 수 책 정 승 인	서
직취	종 별				
채용	목적				
	요 구 인 원				
인원	승 인 인				
채용	· 일자·			채용기간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기 초
소요예산	급 여				
		운영비			
승인	조건				
기타	사항				
「서울특	특별시 상근	인력 관리 규정		斗 같이 상근인력 정수 ^초 월 일	^갞 정을 승인 합니다.
			서울특	투별시장 (인)	
	ž	귀 하			
		,, ~,			

[별지 제3호서식]

상근인력정수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상근인력 정수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서울특별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 이 통보서 대신 별도 공문(사유명시)으로 통보가능.

[별지 제4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서울특별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 무 내 용 :
 - 직 종: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시간)
 -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5. 京 가	ᆔᄀᆡ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는다.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② 지 급 일 : 매월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근로기준
법」 등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	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200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주 소 : (서명)	:)

[별지 제5호서식]

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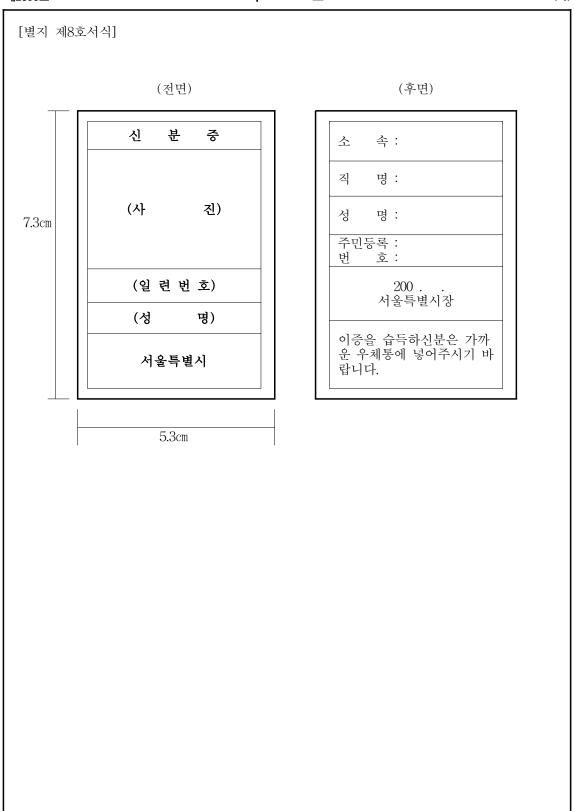
사용부서	직종	채용목적	인원	채용 기간	승인내용	승인 일자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상근인력관리대장

사용 부서	승인 인원 (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자격증	학력	채용 일자	채용 기간	업무 내용	비고

별지	제7호사]식]									
				상근인 	<u>!</u> 력 인	사기록	카드				
소	속					용 직 근무일					
	성	명		주민등.	록번호			호주 !	및 관계		사 진
									의	()	
	. 2						전	화	자택 :		
丁	소						특기			취미	
		ī	군 별	계급	군	번	병	과	입디	1일	전역일
병역	ᅾ사항										
재신	난상황	2	주택	백만원	그 부등		1	백만원	동	산	백만
		부 티	7	까	지			학교	2명 및	전공학:	과
학											
력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기	별
_	근무	부서	채용일	임금일대	हे	상여금		딭	·당업무		비고
경											
력											
기티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부 서	팀	신 분 증 번 호	발 급 년 월 일	소속	직종	성명 (영문)	주민 등록 번호	혈 액 쳥		재발급 사 유		사진	비고
장	장												

※ 용지규격 : A4(횡)

						ᄺ	<u> </u>	(력) ·	증명	М			
					_			• - /					
	성	한글	주민등록										
인적사항	명	영문								번 호			
	주	소								1			
	소	속											
	직	명											
	재즈	기간								.부터 .까지(년	월)	
용 도			1										
위와 길	Lal -	a) z) / z	1크/ 6	スロ	1 2].1	ا ا							
刊升 包	[°] /	네식(/ð	(日)宣	70.0	3 Y L	14.							
						1.4		월		രി			
						딘		늰		크			
						서	울	특 별	시	장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담당관,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담당관[전화:02)2115-7679, E-mail:geek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공회전 제한행위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교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예장동 산 5-85 남산별관 2층, 전화: 02)2115-7696, FAX: 02)2115-7699,

E-mail: kimy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 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직 300명을 증 원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 선하는 한편,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 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전화: 731-6151, FAX: 731-6309, E-mail:

harrukk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 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30호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청렴한 공무원을 매년 발굴·시상함 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 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 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으로 함
 - 나. 상의 종류는 본상 및 대상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대상1명, 본상2명으로 함
 - 다. 수상대상은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서울특 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고, 시상시기는 매년 9월로 함

- 라. 수상자는 자체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사관의 인터넷 공개검 증 및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마. 청백리상의 선정, 등급결정 등을 위하여 하정 청백리 심사위원회 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바.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 의 부상과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5동, 전화: 6360-4507, FAX: 6360-4819, E-mail: leejw62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레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건교부고시 제1980-190('80.6.30)호로 도시 계획시설(도로)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4('99.8.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7 ('07.5.10)호, 제2007-146('07.5.17)호, 제2007-372 ('07.10.18),제2008-61('08.3.6)호, 제2008-393 ('08.1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 변경 작성된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따라 이를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계획(안)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 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남부순환로~부 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구간
 - 가) 구로구 오류동 221-11 ~ 구로 구 항동 산50-3
 -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가) B=30m, L=2,424m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 로 1가 31번지
 - 5)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영 업권조서 : 별첨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 나. 변경사유 : 누락된 영업권 및 기타사 항 정정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語の日み		수 야 또		# 당 당		
ho 표	<u>서</u>	전	다. (때)	平°	ĸ ⊢ ∢ł	ぞ 否	ĸ ⊢	관리관계	디
 <u>冷</u> 아	199-5	사	rC	부천시					
				-	ন হৈ				
必 小	199-4	수도	195	두 사기					
					ন হৈ				
			204		서울특별시 구로구 속대동 463-60	전 교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8-4		
<u>や</u> 叶o	217-1	^소 기	249	6 사 요마	대현APT 412호	88 2월 1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99-1 우 성APT101-1609	근저당권자	
하	111-15	↑	15	다 전 전 전					
					স স্থ				

	1	1							
	્રી	소유권이외의 권리							
	이해관계인	Κ├ ≺┤							
		で で で							
권 조 서	소유자	Κ <u>Γ</u> 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아파 트 21-110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아파 트 21-1101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536 한신맨숀 지하 비02	서울 구로구 항동 120-2	서울 구로구 항동 122	서울 구로구 항동 89-1	서울 구로구 항동 233 서울수목원현대 홈타운 스위트아파트 104-501
요0 오피		주 연 전	학영수	홍감생	। % %	용정메탈 주식회사	대신비철 주식회사	구 윤 아	부 80 %0
	رب با	- - -	1소	1차	소.	사	사	소.	전다
	ጠ ት 5 3 3	50 건 년 년	도소매 (고물상)	제조업 (일반철물)	최조업 (철망)	도매/제조업 (고물상)	도매/제조업 (고물상)	최조업 (원단)	제조업 (금형,기계제작)
	\ \ \-\	어 (**)	대성비철	대동메일	선강철망	용정메탈㈜	대신비철㈜	진수	총대기계
	277.0	팔신하파	8 유 시	요 요 고	면 면 연 연	स्य पर अर	स्य पर अर	무 무 양	86 요 관
	ן ר _ו ני	₹ ₹ (1	283-17	114	114	120-29	120-29	89-1	82-4
	۲ ۲	લે	소를 수	冷 小	. <u>연</u> o 다	아	아	. <u>연</u> o 다	. <u>५०</u> ० 1ने०
	의 감	전	-	2	33	4	2	9	7

나머지 사항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1. 건고시제393호(1978.12.7)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되어 구로구공고제2008-761호 (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신도림동 성락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련서류는 구로구청 도로건설과(☎860-31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신도림동 390-48호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 업
- 다. 사업의 명칭 : 신도럼동 성락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
- 라. 사업규모 : 토지보상 1필지 3,825㎡중 60%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 임

₹ Kł $\overline{\mathsf{K}}$ 뻐

0 차 앱 시 0 차 앱 의

행 자 : 서울특별시장 명 청 : 신도림동 성락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

7 🗆	
선리나용	지 사건 고 저 당 지 당
κ⊢ ∢ł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で で で	(주) 수리은행
ĸ⊢ 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5-184
予 %	소 침려 리 의
이용상황	버 너
(\mathfrak{M}^i)	3,825
<u> </u>	否
선 소 소 판	신도림동 330-48
판	
	고세시시면 시독 (III ¹) 이용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의 지정명칭을 변 경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별 지정명칭 변경내용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유 형 문화재 제9호	종친부 (宗親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1870년 〈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와 한필교의 〈숙천제 아도(宿踐諸衙圖)〉 속 1865년경 종친부 그림·연대별 사 진 등 각종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재 정독도 서관 안에 옮겨져 있는 종친부 건물 2동의 이름이 경근 당(敬近堂:대군·왕자군의 대청)과 옥첩당(玉牒堂:종정경 의 대청)으로 새롭게 규명되었으로 지정명칭에 관부명 과 건물명을 함께 명시함
유 형 문화재 제19호	흥화문 (興化門)	경희궁 홍화문 (慶熙宮 興化門)	흥화문은 경희궁의 정문이므로 그것이 속해 있던 궁(宮 의) 이름을 붙여 '경희궁 흥화문'으로 변경해 일반 시민 들이 해당 문의 소속 궁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함
유 형 문화재 제20호	숭정전 (崇政殿)	경희궁 숭정전 (慶熙宮 崇政殿)	숭정전은 경희궁의 정전(正殿)이나 일제 강점기에 현 위치(동국대학교 내)로 이전되어 그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경희궁 숭정전'으로 변경해 일반 시민들이 해당 전각의 소속 궁을 명시적으로 알 수있게 함
유 형 문화재 제23호	대원군 별장 (大院君 別莊)	석파정 별당 (石坡亭 別堂)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건축물은 홍선대원군의 별장인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의 별당 건물로서 195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으나 지정명칭이 '대원군별장'이라는 큰 개념으로 되어 있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을 홍선대원군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오인하게 하고, 홍선대원군 별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므로 동 건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석파정 별당'으로 변경함
유 형 문화재 제32호	선희궁지 (宣禧宮址)	선희궁 터	'지(址)'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터'로 바꾸어 '선희궁 터'로 변경함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서울 성공회성당	성공회 서울성당	'성공회 서울성당'이 지정된 문화재를 대한성공회의 다른 지역 성당과 구별할 수 있는 더 타당한 명칭이므로 '성공 회 서울성당'으로 변경함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번사창 (飜沙廠)	기기국 번사창 (機器局 飜沙廠)	번사창의 소속 관부인 기기국(機器局)을 밝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소속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기국 번사창'으로 변경함

2 11	113 -1 -1	W-1 -	, J - J - A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유 형 문화재 제71호	구제일은행 본점	옛 제일은행 본점	최초 건립 당시 명칭인 '조선저축은행'으로 변경 시 일저 잔재의 의미가 이름에서 강하게 풍기므로 그 후신인 '저 일은행'을 그대로 살리되 현재 제일은행 본점과 구분하 여 '옛 제일은행 본점'으로 변경함
유 형 문화재 제73호	파고다공원 팔각정	탑골공원 팔각정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과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므5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 '탑골공원 팔각정'으로 변경함
유 형 문화재 제132호	구 미국공사관 (舊 美國公使館)	미국공사관 (美國公使館)	'구(舊)'라는 한자 없이 '미국공사관'만으로 유적의 성 ² 을 드러내줄 수 있으므로 '미국공사관'으로 변경함
기념물 제4호	세검정 (洗劍亭)	세검정 터	멸실된 유적에 건물을 완전히 새로 복원한 경우는 '티'라는 한글 표현을 붙여주기로 함
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지 (陽川鄕校址)	양천향교 터	
기념물 제9호	망원정지 (望遠亭址)	망원정 터	
기념물 제10호	보신각지 (普信閣址)	보신각 터	는 한글표현을 붙여주기로 함
기념물 제12호	낙천정지 (樂天亭址)	낙천정 터	
기념물 제16호	구 배재학당 동관 (舊 培材學堂 東館)	배재학당 동관 (培材學堂 東館)	구(舊)'라는 한자를 삭제하고, 건립 당시 건물 명칭으로 변경함
기념물 제23호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	해공 신익희 가옥 (海公 申翼熙 家屋)	'선생' 등의 호칭은 문화재 지정명칭에서 생략하고, '의집'도 이 가옥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용할 이유는 없으면로 '해공 신익희 가옥'으로 변경함
민속자료 제7호	장교동 한규설대감가 (長橋洞 韓圭卨大監家)	장교동 한규설 가옥 (長橋洞 韓圭卨 家屋)	'대감'이라는 호칭을 한규설에게만 특별히 붙일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한규설이 거쳐간 관직이 너무 많으므로 로 관직명도 생략하며, '가(家)'는 일괄 '가옥(家屋)'으로 변경하되 현 위치로 옮겨지기 전 지역명을 표시하여 '경 교동 한규설 가옥'으로 변경함
민속자료 제8호	오위장 김춘영 가옥 (五衛將 金春永 家屋)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三淸洞 五衛將 金春永 家屋)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 후 명칭 변경 추진한 시항을 존중하되 가옥이 옮겨지기 전 지역명인 '삼청동'을 명시적으로 밝혀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으로 변경한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민속자료	사직동 정재문가	도정궁 경원당	조선 14대왕 선조(宣祖)의 부(父) 덕홍대원군의 대를 이은 경원군(慶原君) 이하전(李夏銓)과 종친부 도정(都正)을 지낸 이해창(李海昌) · 이덕주 등이 거주한 도정궁(都正宮) 안의 살림채임이 일제 강점기 신문 등에서 확인되고 문중에서 동 건물을 '경원당'으로 불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명을 붙인 현재의 명칭보다는 동 건물의 내력과 성격을 명시하여 '도정궁 경원당으로 변경함
제9호	(社稷洞 鄭在文家)	(都正宮 慶原堂)	
민속자료	성북동 이재준가	성북동 이종석 별장	일제 강점기에 장교동(長橋洞) 부자로 널리 알려지고 정학사업을 활발히 한 이종석이 본저(本邸)를 장교동에 두고 성북동에 건립한 별장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물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건물 건립자와 성격을 명시하 '성북동 이종석 별장'으로 변경함
제10호	(城北洞 李載濬家)	(城北洞 李鍾奭 別莊)	
민속자료	상허 이태준 고택	상허 이태준 가옥	<달밤>을 지은 소설가 상혀 이태준이 1932년 토지를 미입하여 1939년 건립한 근대 한옥으로 '고택(古宅)'이라는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고택'을 '가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제11호	(尙虛 李泰俊 古宅)	(尚虛 李泰俊 家屋)	
민속자료	반계 윤웅렬 별서	반계 윤웅렬 별장	'별서(別墅)'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낯선 용어이므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쉬운 표현인 '별장'으로 바꾸어 '반계 윤웅렬 별장'으로 변경함
제12호	(磻溪 尹雄烈 別墅)	(磻溪 尹雄烈 別莊)	
민속자료	원서동 백홍범가	원서동 백홍범 가옥	창덕궁에서 나온 상궁들이 거주한 집이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확실치 않으므로 지정 당시 소유자명을 유지하되가'를 '가옥'으로만 변경함
제13호	(苑西洞 白鴻範家)	(苑西洞 白鴻範 家屋)	
민속자료 제14호	가회동 산업은행관리가 (嘉會洞 産業銀行管理家)	가회동 한씨 가옥 (嘉會洞 韓氏 家屋)	동일은행 전무취체(專務取締:오늘날 전무이사)를 지냈던한상룡(韓相龍:1880~1947)이 1928년 고종황제의 당질((촌 조카)인 이규용(李逵鎔)의 집을 매입한 후 오늘날고같은 형태로 집과 정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1928년부터 1946년까지 거주하던 집이었음이 이번에 최초로 확인되었으나 이완용의 조카로 그 자신 또한 적극적 친일형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화재 지정명칭에 한상룡의 이름 전체를 밝히지 않고 '가회동 한씨 가옥'으로 변경함
민속자료	경운동 민익두가	경운동 민병옥 가옥	조선 말기 여흥(驪與) 민씨(閔氏) 세력의 중심인물이지대한천일은행과 휘문의숙의 설립자인 민영휘(閔泳徽)오그의 아들 민대식(閔大植) 일가의 경운동·관훈동 일다저택의 일부로서 민대식이 그 아들 민병옥(閔丙玉)의 실림집으로 지어준 가옥임이 이번에 새롭게 규명되었으므로 지정 당시 구술에 의해 잘못 채록된 가공의 인물 '민익두'를 삭제하고 '경운동 민병옥 가옥'으로 변경함
제15호	(慶雲洞 민익두家)	(慶雲洞 閔丙玉 家屋)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민속자료	용강동 정구중가	용강동 정구중 가옥	전(前) 국정교과서 사장을 지낸 정구중이 제8대 국회의원이던 1973년 매입, 사망하던 1999년까지 거주하였고, 현재도 그 후손에 의해 꾸준히 관리되는 등 문화재 소유지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정 당시의 명칭을 가급적 유지하되 '가를 '가옥'으로만 변경함
제17호	(龍江洞 鄭求中家)	(龍江洞 鄭求中 家屋)	
민속자료 제19호	운니동 김승현가 (雲泥洞 金承鉉家)	운니동 김승현 가옥 〈운현궁 영로당〉 (雲泥洞 金承鉉 家屋 〈雲峴宮 永老堂〉)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인 김승현씨와 그 후손에 의하 꾸준히 관리되는 등 문화재 소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 고 있으므로 지정 당시 소유자명을 살리되 사적으로 저 정된 운현궁(雲峴宮)의 '영로당(永老堂)' 건물임을 동시 에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운니동 김승현 가옥(운현궁 영 로당)'으로 변경함
민속자료 제20호	도편수 이승업 가옥 (都片手 李承業 家屋)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三角洞 都片手 李承業 家屋)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 후 명칭 변경 추진한 시항을 존중하되 가옥의 원위치인 삼각동을 명시적으로 불혀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으로 변경함
민속자료	명륜동 김종국가	중보사	문묘 관련자 제향을 지내던 숭보사 건물이므로 원래의
제21호	(明倫洞 金鍾國家)	(崇報祠)	유적 명칭을 찾아 변경함
민속자료	가회동 백인제가	가회동 백인제 가옥	이완용의 조카인 한상룡이 1906년 이주하여 인근 가옥 12채를 허물고 1913년 직접 건립해 1928년까지 거주한 가옥임이 이번에 새롭게 규명되었으나 한상룡에 의해 3성된 가회동 산업은행 관리가를 '가회동 한씨 가옥'으로 명칭 변경 추진함을 고려하고 1944년 이후 백인제씨와 그 후손에 의해 꾸준히 관리되는 등 문화재 소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정당시 명칭의 골격을 유지하되 '가'를 '기옥'으로만 바꾸어 '가회동 백인제 가옥'으로 변경함
제22호	(嘉會洞 白麟濟家)	(嘉會洞 白麟濟 家屋)	
민속자료 제24호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海豊府院君 尹澤榮宅 齋室)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祭基洞 海豊府院君 尹澤榮 齋室)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한 후 가옥의 역사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정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고려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댁(宅')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원래 위치한 지역명(제기동)만을 첨가하여 '제기동 하 풍부원군 윤택영 재실'로 변경함
민속자료	장위동 김진홍가	장위동 김진흥 가옥	순조의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일가의 가역이나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인 김진흥 부부가 문화자보존 의지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동 가옥이 보존되고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명칭을 유지하되 '가'만 '가옥으로 바꾸어 '장위동 김진흥 가옥'으로 변경함
제25호	(長位洞 金鎭興家)	(長位洞 金鎭興 家屋)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민속자료 제28호	혜화동 김상협가 (惠化洞 金相浹家)	혜화동 김상협 가옥 (惠化洞 金相浹 家屋)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김상협의 가옥이라는 점이 특히 고려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민속자료 제29호	체부동 홍종문가 (體府洞 洪鍾文家)	체부동 홍종문 가옥 (體府洞 洪鍾文 家屋)	1962년 이후 홍종문씨와 그 후손에 의해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홍종문'을 그대로 붙여주되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민속자료 제30호	김형태 가옥 (金炯泰 家屋)	가회동 김형태 가옥 (嘉會洞 金炯泰 家屋)	1938년 이진억(李鎭億)에 의해 건립된 근대 한옥임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으나 건립자 이진억의 자세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1972년 이후 김형태씨에 의해 꾸준히 보존·관리되고 있어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김형태'를 그대로 붙여주되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민속자료 제32호	만리동 정영국가 (萬里洞 鄭榮國家)	만리동 정영국 가옥 (萬里洞 鄭榮國 家屋)	1936년 정영국(鄭榮國)에 의해 건립된 후 그 후손들에 의해 꾸준히 보존·관리되고 있는 근대 한옥으로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문화재 자 료 제1호	박노수 가옥 (朴魯壽 家屋)	옥인동 박노수 가옥 (玉仁洞 朴魯壽 家屋)	1917년과 192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 따르면 윤덕영(尹德 榮 : 순종의 2번째 황후 순정효황후의 큰 아버지)의 소유 로 되어 있으나 건물과 관련한 더 자세한 부가 자료가 아 직은 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문화재 자 료 제2호	이준구 가옥 (李俊九 家屋)	가회동 이준구 가옥 (嘉會洞 李俊九 家屋)	1917년과 192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 따르면 일대가 가회 동 31번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규모도 5,441평에 달하 며 그 소유자는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자체와 관련한 자세한 부가 자료가 아직은 더 확인 되지 않고 있어 '가'를 '가옥'으로만 통일함
문화재 자 료 제37호	마포 최사영 고택 (麻浦 崔思永 古宅)	마포 최사영 가옥 (麻浦 崔思永 家屋)	건립연대가 1906년이므로 고택이라고 하기보다 '가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마포 최사영 가옥'으로 변경함

- 2. 명칭변경 사유: 지나치게 예스럽고 어려운 한문투로 되어 있거나 문화재 지정대상의 연혁과 불부합하거나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은 문화재 지정명칭을 유형별로일관된 기준과 연혁에 맞게 적용하여 변경함으로써 문화재의 성격을 누구나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3. 변경일자 : 서울시보 게재일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5호(1985.1.14)로 도시 계획시설(하천)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 시성북구고시 제2008-94호(2008.10.30.)로 도 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9호(2006. 6.15)로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448호(2006.12.28.), 제2007-402호(2007. 11. 1.), 제2008-400호(2008.11.13.)로 실시계 획변경인가된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하천정비를 위한 「정릉천 복원 공사(2단계)」에 대해 토지 및 물건 등이 변경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와 같은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정릉동 966-1번지 정릉천 복개지상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하천)
- 다. 사업의 명칭 : 정릉천 복원공사(2단계)
-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하천복원 B=17~30m, L=400m
 - 정릉상가 2개동 및 주변 건축물 정비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 별시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고시일로부터 2009.06.30.까지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임
-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 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자.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치수방재과 ☎920-3415, 건설관리과☎ 920-3400)에 관련도서 및 서류를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태평로1가31) 사업의 명칭 : 정릉천 복원공사(2단계)

		旧									
16t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근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청구권 나타	/rə/l, 근저당권설정	1 1 2 2 2	다. 시 성 년 (5 년) 1 년 (5 년)	근저당권설정		
	常	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론	1가 14 (정통지점)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116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정통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정흥지점)		
	[o	왕	주 스스 호사	전 - 100 - 101 - 120 - 120	김광재		주식회사	소하는해	구 구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유	ĸ ⊢ ≺₁	노원구월계동 18 그랑아파트 102-1701	노원구월계동 18 그랑아파트 102-1701	성북구 정릉동	7-000 1-000	성북구정릉동 388-4	성북구정릉동 388-4	성북구정등동 388-4	성북구정릉동 388-4	
型	선	平	이인콘 (1/2)	완순덕 (1/2)	· 원 아		정양환 (1/2) 송인숙 (1/2)		정양환 (1/2) 송인숙 (1/2)		
	ک اگ			잔	상		7	는 Fi		전 로	
		편입면적 (m²)	0	36	0	33	5	23		rc	
		지적 (m²)	157	%	109	33	83		111	2	
		지목	五	舌	五	舌		5	五	五	
		소재지 지번	정등동 396-41	정등동 396-45	장하다 388-1	정릉동 388-12	전 메 바	388-3	정등동 388-4	장등동 388-13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근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к ⊢ <4	사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정통지점)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116	성북구 정릉동 397-19	서울시 중구	김 네正노1/† 14 (정통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정통지점)		
1		표° 주°	사 천 첫	- K년 - 100 - 101 - 120	김광재	임고시	구 소 하 한 한 한 한 한		구 소 하 하 한 생		
경 전	유자	ĸ ⊢ <4	노원구 월계동 18그락빌	아파트 102-1701	성북구 정릉동 388-1		정류동 388-4		정릉동 388-4		
	선	で で で	이인전	선수 수구 고급	아 전 이		정양환	송인수	정 상 환	송인숙	
五	ک ای			소 로	건물		건물		선 rkr		
		편입면적 (m²)		8	83		83		rc		
		지적 (때)		133	142		8	3	116		
		저	,	古	云		ī	5	古		
		소재지 지번	전 미 나	396-41	전 마 아 나	7-000	전 미 나 나	388-3	※ 하하 사 사		
		의 되			2		c	n	4		

		표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압구 구 구 구			유 - 부 - 부 - 부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해	۲⊢ ح⊦			세무1과		서울시 중구 남매문로 5가 6-1 (서울지사)		동작세무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서울시 중구 남매문로 5가 6-1 (서울지사)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10 -	[0	주 연			사왕 교통시	よか十	한국구택 다 8 2 사	서울시 성북구	노	수 수 라 라 라 라 라 라	한국구택 다 8 2 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유자	K -	성북구 정등동	388-5			는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	%%-6 3%8-6			성북구 정릉동 388-6			
퐈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1 아 - 요o						상 아 윤		
					- 건 - 건 						전 물			
편입면적 (m²)			0	25			0	∞			83			
						108				∞	83			
						五 少 9				12 12 13 14 14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변 H			
		소재기기면	988-5 88-5 88-5	정등동 388-14	388-6 388-6			장릉동 388-15			장 <u>이미</u> 388-11			
	당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양후		가압류	유	양류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해 관 계	ĸ⊢ ≺₁			세무1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서울지사)		동작세무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서울지사)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6	% 品			사왕 특별시	よか十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시 성북구	4	주식회사 우리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구식회사 우리은행		
(장	유자	ĸ ├ 〈┤	성북구 정등동	388-5	동작구 본동 438						동작구 본동 438			
	쉭	상명	ر اعل	<u>i</u>				소 아 8						
亚儿	기기	를 <mark>수 수</mark> ▲ 육 형		는 된 -	건물 전우영						臣 (2)			
		편입면적 (m²)		3	∞						83			
		지 (III°)	Á	G	116						83			
		자 교			元						五			
		소 ^재 지 지면	전 에 아	388-7-	경하 아 아 아						청릉동 388-11			
		의 전	L	С	9						7			

		II	1																					
	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시다그 내가	다. 시 3 번 같 3			그리다리 최고	に			그리다크 서권	도시3년 #3			그리다리서과	도시 3 년 결 3						
	雪岩		$\kappa \vdash$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정릉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정릉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매문로	27 } $10-1$	(명륜동지점)	서울시	+ %	성수동 2가	19-31					
101-	0		次。 品。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서울은행			<u> </u>	세마을	디					
Æ0	卡		к ⊢ <4		성북구 정릉동	388-7		성북구 정릉동	383-9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 우성아파트	2-903	성북구 정릉동	402-7	7 7 7 7	정독十 정등용	383-2				정릉동 383-66		
五	≺ ⊣		₹°			19		구길례	(2/1)		유경애	(3/7)		이순기	(2/7)	박노선 (1/2)		유재천	(1/2)			김희수		
	기기		<u> </u>		7 7	<u>수</u> 된					7.0	신력					7 0	<u>ئ</u> ئ						
		편입면적	(m³)	<	>	S	99		c	0			C L	S		0		Ö	07	_	>		45	
		지	(III,	5	001	٤	8			148			ដ	3		113		S	8	303	377		45	
		소재지 기모	지번 기반	의 아 아 아 아 아	388-7	고 에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전 어	388-16 ⁴⁴		로 아 아 아 아 아 아	383-98		건 당 전	300 o		EOI	정통동 대 383-2	1	리 양 양 양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83-66	왕	383- H	111
	ી શ	_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7.217.212.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그리다되셔지					, ,		
	이해관계		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정등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정등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명륜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서스도 9기	16-31						
쩐			天 (平)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축산	* 시입수압	세마을	다					
TO.	바		κ ⊢ 〈쉬		성북구 정릉동	388-7		성북구 정릉동	383-98	성북구 정릉동	712-36		시스기 성북구 정릉동	383-98			상독구 성하공	383-2				8차구 상하6 383-66	99	
	≺ ⊦		주 ॰ 판		기연수	19년		7.7	一 三 三	ত ম	부영교		んくし	님		박노선		٥ سا ځ	₹ -			김희수		
五	الدلا	<u>i</u> _ c	で参		7	<u>수</u> 된					7 1	신된					기디	<u> </u>				北		
		편입면적	(m)		8	8					8	3 -					ä	8				42		
		전				8					Ş	107					130	EG				248		
		기도				7					ī						ī					古		
		소재지			왕을	388-7					왕	383-98				ع تا تا		383-2			고 다	% of by selection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	
		의 판							<u> </u>	<u>س</u>					7	≧								

※ 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외 토지의 세목조서 내용은 당초 인가 고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서 (변경) ĸł 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태평로1가31) 사업의 명칭 : 정등천 복원공사(2단계)

		비고						
	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지다고 사과	다 ~ ~ ~ ~ ~		소유권이전청 구권 가동기, 근처당권설정	가압류
	章 4	ν-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정통지점)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116	성북구 정등동 397-19
101-	0	天 元		주식회사	자 하 다 하 다 해		김광재	임근식
770	유자	∀ ⊢	노원구월계동	18그랑아파트 102-1701	노원구월계동 18그랑아파트	102-1701	% 장 % 라 마 다 나	388-1
	~ H	形		(1/2)	연수도 (1.7)	î F	아 왕	
型	ا الا	[□]	전	전	추 ~		An 과	
		수광 (m²)	32	32	17	6	32	হা
		구조 _및 규격	찰근콘크 리트조	철근콘크 리트조	철근콘크 리트조	샤기	는 다. 그는 그는 그	샤시 자동개폐 장치
		동 수 류	건물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지장물 3(층)	건물	청마
		소재지		长 司 子	396-45		长。 即 中 。 5	77 - 000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리다의 사과	다 2 2 2 3 4 2 3 3 4 2 3 3 4 3 3 3 3 3 3 3		소유권이전청 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常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청룡지점)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116	성북구 정등동 397-19
-	0	₹°		구식회사	소 하 음 음		김광과	임구식
·	유	к <u>-</u> <4		노원구 월계동 10~라비			소 소 파 등 나 와	388-1
松	~ 4	₹°	۶ ۲ ۲	<u>-</u> 당	で で で で	다 는 는	아 ^돈 아	
亚)	ا ا ا	₩ ₩ ₩ ₩ ₩	전	전	子型	사 등	<u>참</u> 대	
		년 수광 (m²)	33	Ed	17	6	32	
		구조 및 후 후		철근콘크 리트조		ሎ	人口 <u>把</u> 五 五	;T N
		동 전 후		건물		지장된	<u>수</u> 된	
		소재지 지번		る 高 子	396-41		长 响 5	1 000
		는 한 전		-	-		2	

		FI	I					T			I	
		H H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나 <u>시</u> 상천원 30				가압류	양류	근저당권설정		근시당권설정
	해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정통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서울지사)	동작세무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무 <i>로2</i> 가	9-1 (청흥동지점)
101-	[0	で で で	주식회사	조 승 승 승				한국구택 금융공사	土	수 수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수 설 스	구민은행 -
Æ0	유자	KF <4	성북구정릉동 388-4	성북구정릉동 388-4	선	- # - # - # - #		7	중 중 라 바이 구 바이	9 9 988	か、 計 い	%% %% 7-%%
	~ H	元 元	정양환 (1/2)	송인숙 (1/2)		<u>아</u> 무용			작수영		3	<u> </u>
巫力	기기	l 이 수 <	전		전 전			阳			쩐	
		☆☆ (Ⅲ²)	87	হা	56	작.	잣	56		지 전	53	잓
		구조 및 규칙	는 라 라 라 라	경량 관실	판실, 발목	경략판넬		변 보고 비명 당		경광 관실	스페트 플루	사시 자동개폐
		宝 水 의 神	건물	才。	건물	才の	정화조	건물		水	건물	청마
		소재지지판	전 메이 네이	388-13		정흥동 388-14			% 하 하 라 전		자 미년 가	388-16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 1 - 1 - 1 - 1	다시 강천일 3				가압류	양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当	κ⊢ ≺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정통지점)				서울시 중구 남때문로5가 6-1 (서울지사)	동작세무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역곡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무로	\sim
전	[o	云。 是。	주식회사	소하는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논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 스스회사	국민은행
1.	유자	ν <u>⊢</u> <4	곳 마 마	388-4	서보고	。 2 2 3 4 3 4 3 6 6 7 6 7 7 7 7 7		ה ב ב	* 한 파 : - -	88	성복구	388-7
严	~ H	で で で	정양환	송인숙		0판8			전수영			A 유
五	기	를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 ∤		점			名			전
		년 (m²)		8		36			- 36			£3
	다. 성다 원 를 합니다 망선 전 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章 章 章	- !	人 出 回	型叫叫		
	8 전 전 전 전 등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건물			건물		
		소째지	전 메이 바이	388-4		80년 1988년 1987년			で 1000 1		자 메 나	388-7
		의 전 전	c	n		4			rC			9

		石田				277						2/7					3/7						
	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근저당권설정 2						근저당권설정 2					근저당권설정 3			7 - 1 - 1 - 1 - 1 - 1	다. 스 작년 일 &		근저당권설정
	하관관	٧٢ ٢٦		1	서울시 중구	10-1	(명륜동지점)				서울시 중구	표내군도2/r 9-1	(정등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IU-1 (명륜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생구ㅎ 27F 19-31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19-31
10F	0	野º マシ			۲ اد آخار اد	十 イ マ か ら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り の り の り り り り り り り り り	년 년 0				۲ ۲ ۲	구식 오 고민으 최) -				주식회사	는 라 아		서울추산	시입소압 세마을금고	서울축산	기업조합
杈	유자	사			성복구	왕	405-7				성북구	る。	86 -286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24 24 25 34 34 34	2-903	소사	383-2 383-2	성북구	동 하 하 아
型	~ 4	품º 돈º			7	1 1 1 1 1 1 1 1 1	3				ਜੋ 7	구설에 (2건)	Ţ.				바생 19	(3/1)		7, 1,1	서 사		유재천
ш-	가	수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15 福포	13 주택	수기		14	14	15 福포	13 주택	10	6 주택	자.	지 지	15 福포	13 주택	10 沙고	6 주택	자 기가	7 주택	1소	8 구토	হা
		나조 및 바라		스레트 블록		스레트, 발목	사시자동개 폐장치	-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샤시자동개 폐장치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스레트, 블록		스페트, 블랙	철파이프	스레트 블랙	설파이피
		면 전 등 등	건물	건물			천마	정화조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참마	장 화 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장학조 조학조	건물	참마	건물	사다
		소째지		l.	•	•			•	!	년 대 가	383-109	•	•	•				•		전 이미 아	383-110	
	게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근저당권설정								그리다되셔져	도시 3 번 글 3					그 한다 의 성격	도시 강권 결정	
	当 中	사				서우시 주구	남대문로2가 9~1	(정롱동지점)						서우시 조구	남매군로	27 10-1	(명한공시점)				소울 상독구 구구	성수동 2가	10 01
	0	玉°					주식회사 고민은행	ا ا ا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축산 기업조합	세마을금	4
전	유자	κ⊦ <4					소 소 라 등 다 동						为为子子子	712-36			성북구	~ % % % %			소부구		
严	≺ ⊣	形容					구길례						수 소	- >				이순기		, ,	사 사		유재천
五八	기기	での分でする					が江						사	-				전		ī N	F		冷口
шч		中 (国)		75								52	3				16		t	-		∞	
		구조 및 규격									ا الا الا										스테 티	加加	
		된 사 파										건물										<u></u>	
		소재지									น น ร	383-98									전 에 아	383-2	
		의 되										7									0	0	

4	_	-	-
	•		
•		1	•

		디미										
	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관	선										
	南	ĸ⊢										
10t	0	野 ぞ										
杈	유자	사			장 함 자	383-66						
平	~ H	平°			:	김희수						
π-	기	실 수 수 수 후 후 후										
		小 即 (<u>m</u>)	হা	হা	전	사	2주	2圣	6주	27	사	
		구조 및 규격	변돌 (방범창살 포함) L13*H12	철재 (기동포함)	조경석포함	파파	황나무	사철나무	화양관	개나리	바	715
		라 하 를 하	다 %	파	학단				삮			
		소째지 지번			조 하 자	383-111						
	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中	≺ 4										
	o 하	κ⊢ To										
전		<u>た</u> 。										
	유	к ⊢ ≺4			성북구	% 양 양 양	000 000					
₹°	<4 ∼4	平°				교학						
平	ム	合りなる事を登る			다	함						
144		今 (m²)										
		구조 _및 규격			,	표다						
		를 장 하				정한						
		소째지 지번			장	99-88 388-66						
		유 등 등				6						

※ 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변경)외 물건의 세목조서 내용은 당초 인가 고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도면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최초) 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 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 2. 위 치: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 3. 면 적: 604,178m²
- 4.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 5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도면: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15-7588) 남산공원관리사업소(☎02-3783-5970)

도시계획시설(남산제1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l T	(m2)	(m2)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계	604,178.00	106,691.68	15	10,992.93	47,937.64	317	
	소 계	107,402.83	71,902.83				137	
기 반	г э	CO C7C TO	27,176.50					
시 설	도 로	62,676.50 -	(35,500.00)					
	광 장	44,726.33	44,726.33				137	
조	경 시 설	1,262.05	1,262.05				3	
유	희 시 설	1,796.08	1,796.08				5	
휴	양 시 설	7,377.77	7,377.77				115	
卫	양 시 설	6,616.08	6,616.08	3	5,300.92	29,034.47		
운	동 시 설	3,694.87	3,694.87				43	
편	익 시 설	12,574.02	12,574.02	11	4,598.27	16,765.69	14	
관	리 시 설	1,467.98	1,467.98	1	1,093.74	2,137.48		
녹지] 및 기 타	461,986.32						
	시설율 정 40%)		106,69	1.68 / 60	4,178.00 * 100 =	17.66%	·	
	건폐율 정 10%)		10,99	2.93 / 60	4,178.00 * 100 =	1.82%		

나. 시설조서

ユ	伒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m2)	공작물	비고
7	正	기 결 정	十里	(m2)	(m2)	12	(개소)	바닥면적	연면적	(7])	미끄
	ō	합 계		604,178.00	106,691.68		15	10,992.93	47,937.64	317	
		소 계		107,402.83	71,902.83					137	
7]	반	도 로		62,676.50	27,176.50						신설
시	설				(35,500.00)						
		광 장	가	44,726.33	44,726.33					137	신설
			가-1	(5,088.39)	(5,088.39)					(8)	신설
			가-2	(20,598.42)	(20,598.42)					(57)	신설
			가-3	(3,040.20)	(3,040.20)					(1)	신설
			가-4	(5,885.70)	(5,885.70)					(11)	신설
			가-5	(5,106.49)	(5,106.49)					(39)	신설
			가-6	(435.98)	(435.98)					(3)	신설
			가-7	(2,447.87)	(2,447.87)					(12)	신설
	1	, , ,	가-8	(2,123.28)	(2,123.28)					(6)	신설
조	경	소계	.,	1,262.05	1,262.05					3	v1 v1
<u> </u>	설	와룡묘	사	1,262.05	1,262.05					3	신설
유	한	소계)	1,796.08	1,796.08					5	v1 v1
시	설	어린이놀이터	라	1,796.08	1,796.08					5	신설
		소 계)	7,377.77	7,377.77					115	7173
			다	7,377.77	7,377.77					115	신설
			다-1	(2,061.83)	(2,061.83)					(13)	신설
			다-2 다-3	(1,056.43)	(1,056.43)					(7)	신설
			다-3 다-4	(428.26)	(428.26)					(4)	신설
ゔ	ሳኔ			(826.88)	(826.88)					(19)	신설
휴 ,)	양		다-5 다-6	(1,065.04) (720.23)	(1,065.04)					(10)	신설
시	설	휴게소	다-7	(218.91)	(720.23) (218.91)					(14)	신설 신설
			다-8								
				(118.10)	(118.10)					(2)	신설
			다-9	(145.71)	(145.71)					(12)	신설
			다-10	(159.59)	(159.59)					(9)	신설
			다-11	(363.49)	(363.49)					(12)	신설
			다-12	(213.30)	(213.30)					(7)	신설
		소 계		6,616.08	6,616.08		3	5,300.92	29,034.47		
		남산시립 도서관	5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신설
	양 설	안중근기념관	6	1,185.02	1,185.02	R/C	1	1,185.02	3,799.55		신설
1	교	서울과학 교육원	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신설
		봉수대	차	107.67	107.67						신설

¬ н	ਹੈ ਮੋ ਜ਼ੀ	нъ	부지면적 	시설면적	77	규모	건축물	(m2)	공작물	n) =
구 분	시 설 명	부호	(m2)	(m2)	구조	(개소)	바닥면적	연면적	(7])	비고
	소 계		3,694.87	3,694.87					43	
		마	572.18	572.18						신설
	배드민턴장	마-1	(245.22)	(245.22)						신설
운 동		마-2	(326.96)	(326.96)						신설
· · · · · · · · · · · · · · · · · · ·		바	3,122.69	3,122.69					43	신설
시 근		바-1	(248.11)	(248.11)					(10)	신설
	체력단련장	바-2	(1,687.91)	(1,687.91)					(12)	신설
	7117220	바-3	(233.78)	(233.78)					(9)	신설
		바-4	(759.64)	(759.64)					(3)	신설
		바-5	(193.25)	(193.25)					(9)	신설
	소 계		12,574.02	12,574.02		11	4,598.27	16,765.69	14	
		나	8,013.52	8,013.52					14	신설
		나-1	(851.01)	(851.01)						신설
	주차장	나-2	(4,179.70)	(4,179.70)					(9)	신설
		나-3	(1,984.20)	(1,984.20)						신설
		나-4	(998.61)	(998.61)					(5)	신설
		2	529.55	529.55		6	529.55	529.55		신설
		2-1	(118.48)	(118.48)	R/C	(1)	(118.48)	(118.48)		신설
		2-2	(30.66)	(30.66)	R/C	(1)	(30.66)	(30.66)		신설
	화장실	2-3	(140.11)	(140.11)	R/C	(1)	(140.11)	(140.11)		신설
		2-4	(74.29)	(74.29)	R/C	(1)	(74.29)	(74.29)		신설
편 익		2-5	(86.63)	(86.63)	R/C	(1)	(86.63)	(86.63)		신설
시 설	.1 6 .1 41	2-6	(79.38)	(79.38)	R/C	(1)	(79.38)	(79.38)		신설
	서울타워	3	559.94	559.94	R/C	1	2,502.16	13,842.74		신설
	매점	4	784.80	784.80	D/G	4	784.10	784.10		신설
		4-1	(79.72)	(79.72)	R/C	(1)	(79.02)	(79.02)		신설
		4-2	(239.18)	(239.18)	R/C	(1)	(239.18)	(239.18)		신설
		4-3	(310.76)	(310.76)	R/C	(1)	(310.76)	(310.76)		신설
	지무리리	4-4	(155.14)	(155.14)	R/C	(1)	(155.14)	(155.14)		신설
	삭도하단 승강장	아	1,612.84	1,612.84			298.67	1,125.51		신설
	한국삭도 (종점)	자	956.24	956.24			483.79	483.79		신설
	경사형엘리베 이터	타	117.13	117.13						신설
ন ন	소 계		1,467.98	1,467.98		1	1,093.74	2,137.48		
관 리	관리실	1	1,043.74	1,043.74	R/C	1	1,043.74	2,087.48		신설
시 설	남산가압장	카	424.24	424.24			50.00	50.00		신설
녹 지	소 계		461,986.32							
및 기 타	녹지 및 기타		461,986.32							신설

000오					^1	-		200.	J. I. Z
다.	도로	조서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m²)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u>ઇ</u>	}-	7	4		27,176.50				
중로	3	소	계		4,500.00				
	1	1	20	895.0	(17,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 경계	공원 경계	신설
	1	2	20	880.0	(17,6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 경계	공원 경계	신설
	2	1	15	300.0	4,50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신설
				부지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산입, 미 산입시킴으로	서 시설율에 미	포함.		
소로	á	소	계		16,300.00				
	1	1	10	165.0	1,65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신설
	1	2	10	200.0	2,000.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2	신설
	2	1	8	36.0	288.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3	신설
	3	1	4	65.0	260.00	산책로	주차장2	진입광장4	신설
	3	2	3	36.0	108.00	부진입로	소로 1-2	주차장3	신설
	3	3	6	273.0	1,638.00	부진입로	중로 1-1	공원 경계	신설
	3	4	6	336.0	2,016.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주차장4	신설
	3	5	6	645.0	3,870.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진입광장7	신설
	3	6	4	138.0	552.00	산책로	소로 3-4	진입광장8	신설
	3	7	4	97.0	388.00	산책로	소로 3-5	진입광장8	신설
	3	8	5	479.0	2,395.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중로 1-2	신설
	3	9	5	48.0	240.00	산책로	산책로13	진입광장5	신설
	3	10	5	164.0	820.00	산책로	중로 1-2	남산3호터널	신설
	3	11	5	15.0	75.00	산책로	중로 1-1	공원 경계	신설
산책로	3	소	계		6,376.50				
	_	1	5	38.0	190.00	산책로	중로 1-2	진입광장1	신설
	_	2	5	25.0	125.00	산책로	중로 1-1	진입광장1	신설
	-	3	5	55.0	275.00	산책로	소로 1-1	진입광장2	신설
	-	4	3	44.0	132.00	산책로	중로 1-2	진입광장2	신설
	-	5	8	48.0	384.00	산책로	중로 2-1	주차장2	신설
	-	6	5	42.0	210.00	산책로	중로 2-1	진입광장3	신설
	-	7	3	21.0	63.00	산책로	중로 2-1	산책로6	신설
	-	8	3	82.0	246.00	산책로	산책로6	주차장2	신설
	-	9	2	22.0	44.0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6	신설
	-	10	2	18.0	36.00	산책로	산책로6	진입광장3	신설
	_	11	4	23.0	92.00	산책로	중로 1-1	진입광장4	신설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산책로	-	12	5	34.0	170.00	산책로	중로 1-2	주차장2	신설
	_	13	3	130.0	390.00	등산로	중로 1-2	소로 3-9	신설
	-	14	4	637.0	2,548.00	등산로	소로 3-9	진입광장6	신설
	-	15	2	157.0	314.00	등산로	휴게소2	산책로14	신설
	-	16	3	56.0	168.00	등산로	공원 경계	소로 3-5	신설
	-	17	3	159.0	477.00	등산로	공원 경계	소로 3-5	신설
	-	18	1.5	13.0	19.50	등산로	산책로21	산책로20	신설
	-	19	1.5	66.0	99.00	등산로	휴게소9	소로 3-8	신설
	-	20	3	56.0	168.00	등산로	공원 경계	반공청년기념비	신설
	_	21	2	79.0	158.00	등산로	공원 경계	휴게소3	신설
	-	22	2	34.0	68.00	등산로	산책로21	소로 3-8	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 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1호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신규지정)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С	27	<u> </u>	8-400	10.0	170%	7층/ 12층 이하	60%	3	주택 재개발	전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시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건축계획 수립할 것.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할 것.

나.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신규지정)

X C]활권 -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С	26	홍은동	11-320	3.4	170%	7층/ 12층 이하	60%	3	주택 재개발	전면 (수 복)	정비계획수립시 단지 초입부 종 교부지 및 지형을 고려하여 진출 입구 위치조정 등을 검토할 것.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 거정비과(☎3707-8235) 및 서대문구 재개 발과(☎330-194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호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02호(2005.7.14) 및 고시 제2005-320호(2005.10.20)로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
- 한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97조·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를 의제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과(☎ 3707-8437), 시설계획과(☎ 6360-4771~8) 및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570-6385~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구 분	내 용	비고
기 정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외 14필지	
변경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외 11필지	서고시316호 (2008.9.1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칭: 가톨릭중앙의료원 새병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1)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 면적 (m²)		변경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한경 설정된	미끄
111,614.4	감)1,467.4	110,147.0	서고시316호 (2008.9.18)	

(2) 사업시행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건축면적	34,200.71㎡ (새병원 :11,177.89㎡)	35,881.74m²	증) 1,681.03m²
연 면 적	307,068.84㎡ (새병원 :174,081.64㎡)	327,057.67 m²	증) 19.988.83m²
건축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지하6층, 지상22층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반포로 변 완화차로 목: 3.0m 길이: 372.0m 면적: 1,005.5m² 사평로변 완화차로 목: 3.0m 길이: 207.5m 면적: 636.0m² 	 반포로 변 완화차로 목: 3.0m 길이: 323.0m 면적: 851.0m² 사평로변 완화차로 목: 3.0m 길이: 208.0m 면적: 678.4m²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완화차로) 비용은 사업주가 자체조달하고 조성이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대지면적 제외된 현황도로 62 ㎡ 별도 조성 무상귀속

(3) 건축물별 사업시행규모

건물명	건축면	적(m²)	연면?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의과대학	4,893.11	4,989.93	22,452.30	23,155.41	1/7	1/7	증축(구)
2.의과학원	2,549.00	3,091.17	21,282.70	23,367.51	2/9	2/9	증축/임시사용승인 득
3.성모병원	8,502.16	8,502.16	54,567.68	54,567.68	3/10	3/10	-
4.기숙사	1,289.42	1,392.54	2,897.88	3,074.18	0/4	0/4	증축(구)
5.영안실 및 해부실습실	4,006.89	3,235.16	6,808.10	5,508.13	1/3	1/3	증축(구)
6.성의회관	1,782.24	2,375.24	24,978.54	27,417.30	2/14	2/14	증축/임시사용승인 득
7.중앙의료원	11,177.89	12,295.54	174,081.64	189,967.46	6/20	6/22	증축
단지전체합계	34,200.71	35,881.74	307,068.84	327,057.67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구 분	착 수 일	준 공 예 정 일	비고
기 정	■ 실시계획 인가일	2008. 10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	2009. 1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 등 명세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선번	조세시	시독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ㅠ사
1	서초구 반포동 산45-12	임야	2.0	감)2.0	0	서울특별시
2	서초구 반포동 525-2	도로	43.0	감)43.0	0	서울특별시
3	서초구 반포동 525-8	도로	19.0	감)19.0	0	서울특별시

-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건축과(☎ 3707-8437), 시설계획과(☎ 6360-3771~8)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570-6386~7)
- 사. 관련도면: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 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1.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 적(m²)	비고
신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33,59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л н	1	면 적(m²)		구성비	nj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소계	33,593	-	33,59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593	감) 33,59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3,593	33,593	100.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2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20%이상(순부담) 확보:33,593m²(2종)×20%=6,718m² < 6,946m²(20.67%) 계획함.</p>

2) 토지이용계획

7	· 분	면 적(m²)	비 율(%)	비 고
합	계	33,593	100.0	
=1111	소 계	9,828	29.3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 시설	도 로	8,148	24.3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882m'는
16	공 원	1,680	5.0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택지	소 계	23,765	70.7	
4 7	공동주택	23,765	70.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권기		Ť	구 모			21 O	어 가	위		スゟ	ラ) ラ	
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 능	사 용 형 태	연 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32	6	ı	_	74	사당동 168	사당동 168	_	_	-
폐지	소로	3	33	6	ı	_	88	사당동 167	사당동 167	-	-	-
폐지	소로	3	34	6	-	-	87	사당동 165	사당동 167	-	-	-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	사당동 164-75	사당동 164-42	-	-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60	사당동 150-5	사당동 176-50	_	_	-
변경	소로	3	(L)	6~11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60	사당동 150-5	사당동 176-50	_	_	-
기정	소로	3	31	10	-	일반 도로	74	사당동 170-25	사당동 170-3	_	_	-
변경	중로	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4	사당동 170-25	사당동 170-3	_	_	_
기정	중로	2	9	8~20	-	-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산22-2	_	-	-
변경	중로	2	9	8~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산22-21	_	_	사업대상지 구간 B=25, L=363m 확폭
기정	중로	2	Ľ)	12~18	-	-	192	사당동 708-641	사당동 산18-45	-	-	-
변경	대로	3		22~2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2	사당동 164-641	사당동 162-61	_	_	_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 정	시설의	종류	اخ اه		ы л		
구 분	명 칭	세분류	1 1 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키 비고
신설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	증)1,680	1,680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적용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조서

결 정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초	нJэ	
구 분	시설병	Π Λ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주차장	사당동 164-4일원	708	감)708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구	.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구분	명 칭	면적(m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비고
신설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593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181	_	_	181	-	

나) 건축시설계획

명칭	구분 면적(m²)		위 치	3	주된 용도	ž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공동주택 용 지	23,765	Ī			'동주택 및 대복리시설	40)%이하	250%이하	최고 25층		
0 /1		• :	● 총 세대수 : 551세대(분양 466, 임대 85)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로 및 전용 60m² 이			551(100%)) 466		85(100.0%)			
	규모 및			하	125(22.7%)		74	51(60.0%)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 60㎡ ~ 85㎡이하		250(45.4%)		216	34(40.0%)	
			전용 85㎡초괴	7	176(31.9%)	176(31.9%) 176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m²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06%									
건축된	물 높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완화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등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해 수평거리의 1.8배까지 사선 제한 완화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드기시 O ᅰ 최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33,593 m²	9,828 m²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9,828m² - 2,882m² = 6,9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33,593㎡ 23,765㎡ 9,828㎡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9,828㎡ - 2,882㎡ = 6,946㎡(20.7%)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2,882㎡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도로 2,174㎡, 주차장 708㎡)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6,946 / 23,765 =	가능용적률 250%이하 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m²)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m²)	세대규모(전용)
정비구역 내	23,765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 법정:7,685.6 • 계획:7,805.4	•임대주택 세대수 : 85세대 -60㎡이하 : 51세대(60%) -60~85㎡이하 : 34세대(40%)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기존용적률	120.39%		
용적률 증가분	계획용적률	249.75%		
	증가된 용적률	249.75% - 120.39% = 129.36%		
증가 용적률의 25%	129.36% × 25% = 32.34%			
연면적 환산	23,765㎡ × 32.34% = 7,685.601㎡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세대수 :85세다 - 전용면적 59.9	05.4㎡ > 7,685.6㎡] 99㎡형 : 51세대 (60%) 99㎡형 : 34세대 (40%)		

-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 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 기존 : 473세대 • 계획 : 551세대	
정비사업	4년 이내	• 증가 : 78세대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
 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동작
 구청 주택과(☎ 820-9946)에 관계서
 류 비치 및 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32-41번지 일대 「도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 철 도

시계획시설(철도)결정」에 대하여 2009년 제 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9.01.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 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철 도)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우이~신설간 경전철을 건설하여 지하철 소외지역인 동북 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十七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²)	H 75
신설	철도	도시철도 (본선)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일대 (우이유원지)	동대문구 신설동 32-41번지일대 (1호선 신설동역)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호선)	10,712	99,073	우이~신 설 경전철

○ 차량기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m²)	비고
신설	철도	차량기지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13,360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m²)	비고
		계	13개소	21,804	
		L01 정거장	강북구 우이동 17-1번지 일대	2,088	
		L02 정거장	강북구 우이동 57-15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507-16번지 일대	1,572	
		L03 정거장	강북구 우이동 72-115번지 일대	1,559	
		L04 정거장	강북구 수유동 338-37번지 일대	1,563	
		L05 정거장	강북구 수유동 472-1번지 일대	1,717	
신설	철도	L06 정거장	강북구 미아동 791-2400번지 일대	1,250	
		L07 정거장	강북구 미아동 745-5번지 일대	1,640	
		L08 정거장	강북구 미아동 837-2046번지 일대	1,486	
		L09 정거장	성북구 정릉동 303-1번지 일대	1,823	
		L10 정거장	성북구 정릉동 966-62번지 일대	1,633	
		L11 정거장	성북구 동선동 101-2번지 일대	1,539	
		L12 정거장	성북구 보문동 127-1번지 일대	1,291	
		L13 정거장	동대문구 신설동 32-41번지 일대	2,643	

- 3.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772-7159) 및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02-731-1415),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581),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54), 강북구청 뉴타운과(901-6385),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1)에 각각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유수지, 공원) 변경 결 정 및 지형도면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 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두무 개길 금호교차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도시계 획시설(도로, 유수지, 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7] 7-]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丁七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점	7名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135	20	보조 간선	5,730	반포대교	응봉동 9-5	일반 도로	-	70. 3.26	
기정	중로	1	135	20~27	보조 간선	5,730 (180)	반포대교	응봉동 9-5	일반 도로	-		공원및유수 지구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7 11	٦) ٢-	시설의	6] 7]		면적(m²)		리 그 커리시	ul =
구분	기 능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금호동 4가 56번지	8,439	감)600	7,839	87.12.31	도로중복결정 (72㎡)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7 11	-) L	시설의	0] 7]		면적(r	n²)	최 초	ul =
구분	기 능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공 원	근린공원	금호동 4가 1,540일대	650,987.3	_	650,987.3	77.7.9	도로중복결정 (1,282㎡)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8) 및 성동구 도시개발과 (☎ 2286-555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1. 직인의 폐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일반회계중랑물 재생센터징수관 직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중랑물재생 센터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2.0cm	回留馬灣(N) 三世月间高 引局时間間 引る張迅巨	2009.1	
서울특별시					2009.1.2일자 일반회계에서
중랑물재생센터					특별회계로 전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 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 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Al ul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예정된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되는 사유	처분내용
1	110964	케인컴(주)	이윤상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1 우성빌딩 212호	기준미달 (기술계1)	영업정지1월
2	112152	에틴시스템㈜	송태구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8 아이티벤처타워 서관 12층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 록의 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 의 취소) 제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의 사전통지)
- 3.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홍양표 전자우편 yphong@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 동 37) 서소문청사3동 (☎ 02-6360-4992,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9. 2. 2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 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

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담당자 ☎02-6360-4992, 홍양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87호 「서울형 어린이집」공인 신청

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보육·안심 보육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하는 「서 울형 어린이집」을 공인하고자 하니 어린 이집 운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2009년도 공인계획
 - 가. 공인 시설수 : 1,115개소(공공, 민간)
 - 나. 공인시설 지원내용
 - ① 민간시설
 - 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 시설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
 -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영아반 2개이상의 보육시설)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40인 이상 시설)
- 기타 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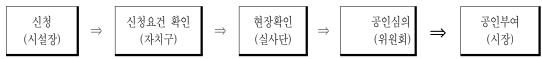
② 공 통

- 보육도우미 인건비, CC-TV설치 비(설치 희망시설에 한함), 조리 기구 구입비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증서 및 공 인현판
- 2.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 가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
 - (다만,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은 제외) 나.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
 - 다. 신청기간 : '09. 2. 6(금)~'09. 2.16(월)

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 라. 제출서류
 - ① 공인신청서(종사자 현황 및 어린이
-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집 소개서 포함)
- ②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희망 계획서 (현재 미지정 시설에 한함)
- ③ 우수 보육프로그램 또는 모범사례(6 개월이상 지속되고 진행 중인 사례)
- ④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08 년 3기 신청시설은 인증결과 발표 후 제출가능)
- 3. 평가 및 결과 발표
 - 가. 평가항목: 정부평가인증 항목외 서울 형 어린이집 공인지표 12개 항목 추가
 - 40인 미만시설 : 5개분야 71개 항목
 - 40인 이상시설 : 5개분야 92개 항목
 - * 세부항목 등은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또는 보육포털서비스(아이서울.com, http://iseoul.seoul.go.kr)에서 확 인 바랍니다.



- 다. 결과 발표 : '09. 3월말(자치구를 통해 통보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포털 서비스에 게재)
 - ※ 신청시설 수 등 상황에 따라 4월까지 2~3차례 나누어 발표할 수 있음
- 4. 기타사항
 - 가.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공인 후 준수사항 등은 보육정보센터(http://children.seoul. go.kr) 또는 보육포털서비스(아이서 울.com, http://iseoul.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을 무효로 합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

터(120)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 3707-9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경영기획실 (비전전략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 례안	"
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홍에 관한 조례안	경영기획실 (평생교육담당관)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본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정릉동 941-1 일대)	"
의견청취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동 280번 지 일대)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합정동 139-21 외 4개 소)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일대)	"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무교동 97-2 외 12개소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1번지)	"
(9)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18-1 일대 외 1개소)	n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동의안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국 (재무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8호(2002.5.30) 로 도시계획 결정 및 광명시 고시 제 2008-65호(2008.9.23)로 도시 관리계획 변 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2(2008.11.13)호로 인가고 시 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전 화3708-8662)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574 -17(광명시계)~ 575-5(광명시계)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71(광 명시계) ~ 670-1(광명시계)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 사업의 명칭 :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4공구)건설공사
-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총 괄 : 폭 35~44m 연장 4.245m
 - 금회대상 : 폭 35~44m, 연장 36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3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실시 계획고시일로부터 2013.12.31일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명세: 별항
- 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의 주소, 성명: 별항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별항
- 자. 실시계획인가 설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63

광명시 소하동 949-9 명지빌라 라동 101호

노제왕

193

103

冬

574

라 사 하 자 자

광명시 소하동 949-9 명지빌라 라동 101호

사용

103

103

حك

574 -20

나 하 하 유

서화종

112

112

不

10

서화종

112

112

を

 \prec 1 灭 ĸ⊢ 否 寸 To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 K \prec 4 소하동 820-45 574-10 574-3 ĸ⊢ ∘⊨ 광명시 사하는 수산 수 ক্ত \prec 1 국(건설 교통부) 강석수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전용호 김광남 강정순 사항공 사화종 否 田 \overline{x}° 소 기분 \mathcal{Z} 418 1,708 88 88 \mathbb{S} 83 109 Ξ ス (m³) 1,708 23 109 92 418 66 288 99 51 전 枣 夕 为 利 **Д**⊐ 內 전 为 內 574 -17 574 -3 574 -18 574 796 574 -16 574 574 -22 574 -15 P 29 人生 ₹ 소재지 라 하 하 하 사 라 하 하 하 자 라 하 하 유 구 나 아 아 아 라 하 하 하 유 나 아 아 아 라 하 하 유 구 나라 송 유 구 나 아 아 아 라 하 하 하 자 ĸ \mathbf{k} 车车 ə 뻐 \prec 4 灭 $\forall \vdash$ Ħ 可 ₹°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804' ∞ 건설공사 六 \prec 4 820-45 574-10 광명시 소하동 574-3 ŀΚŀ $\mathsf{K} \vdash$ o⊨ 수 수 수왕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40 \prec 4 강석수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김광남 강정순 전용호 서화종 서화종 TO \mathcal{Z}^{0} 소유권 판 면색 (m²) 33 418 1,708 88 88 \approx 83 109 윤 51 1,708 92 418 268 998 3366 109 51 (III) 不了 저 平 **∄**π 灭 图 云 内 云 云 云 고판 366 574 -17 P 23 574 -16 574 -18 574 -10 574 574 -15 574 -3 574 -11 라 왕 하 아 라 는 하 하 아 아 라 항 하 유 나 과 나 왕 유 나 아 나 왕 유 사 나 하 하 하 나 나 라 종 유 구 왕 사라 송 유 나 라 왕 하 유 나 소재지 나 하 하 유 사업명 空 型 2 ∞

피기

사 사 사 ə

数 第 第 章 号 号 号

段 重 资 号 号 号 号

短 强 强 强 号 号 号 号

	비고		別所号を	別が高	関係	明る	別所号る	明な記号を	別所	開る場合	明る名	現る場合	現る場合	現る単っる	明らず	別を発	の名
	하	유내								근저당 지상권							
	雫	소								광명시 하안동 33-7							
	市	平。								古る名はなるよう							
<i>S</i> ₹	유자	κ⊢ ∢4	광명시 소하2동1104-2 토미하우스 A-101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0-25	평택시 서정동 974 세경아파트 7-202	광명시 소한2동 1104-2 토미하우스 에이동 101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0-25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974 세경아파트 7-202		광명시 소하동 29-42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压	선	平。	노라슈	사 다 어	구 다 교	노 급 슈 급	사 다 라	는 다 대	국(건설 교통부)	김상열	지상덕	지상배	지칠레	지향수	김미란	지혜권	지혜미
	수 유	라	1/3	1/3	1/3	1/3	1/3	1/3			6/16	4/16	1/16	1/16	12/144	8/144	8/144
	라고 오프	(메)		66			571		338	1,643				709			
	도 전			66			571		328	1,643				709			
		<u> </u>		ح			幺		전	전				전			
	K	五		572 -6			573		571	572				571 -3			
	2	수 <u>녹</u> 도		나라 하하 유			나 아 아 아		라 시 하 동 자	다 시 하 하 주				라 장 구 하			
	ર્ગ	사 사 기								다 지 시 상 권							
	계	Κ 수								광명시 하안동 33-7							
	中	성명								李号文 京 等 等 等 字 子							
장	소 유 자	ĸ ⊢ 〈쉬	광명시 소하2동1104-2 토미하우스 A-101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0-25	평택시 서정동 974 세경아파트 7-202	광명시 소하2동 1104-2 토미하우스 에이동 101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0-25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974 세경아파트 7-202		광명시 소하동 29-42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	성명	노라순	사 상 다	나 다 III	노라슈	수무각	두그	국(건설 교통부)	김상열	지상덕	지상배	지칠레	지층수	김미란	지혜련	지혜미
	소유권	지분	1/3	1/3	1/3	1/3	1/3	1/3			6/16	4/16	1/16	1/16	12/144	8/144	8/144
	대 대 대	면속 (m²)		66			571		328	1,643				709			
		₹ (E		66			571		338	1,643				709			
	1	Д		전			冬		전	전				전			
		전		572			573		571	572				571			
	대 소재지	전 어		12 지흥동			13 고찬구		14 지흥동	15 리총동				16 대상 기술 동			

	비고		型と 引の公	現る記号の	およる	別所号を	明らる	用る名	別る	明らずる	別所号を	改革号る	明らずる	現る場合	まる。	まる。	おる社
	당	유명															
	〒	사															
	中	平。															
TCO	수 부	소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패리 20
平	선	平° 下°	지수현	국(건설 교통부)	지상덕	지상배	지칠레	수	김미란	지혜[관	지혜미	지승현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지상덕	지상배	지칠례
	く 。 た	판	8/144		91/9	4/16	1/16	1/16	12/144	8/144	8/144	8/144			91/9	4/16	1/16
	는 의	(매)		48				727					135	179		2,048	
	ry Fy	(m²)		48				122					135	179		2,048	
	1	<u> </u>		버				幺					버	버		전	
	K	型		570 -4				570	2				282	575 -4		573	
		수 <u>논</u> <u>돈</u>		급천구 시흥동				라 구 구	0				스라 하하다 유	라 시 하 시 하 동 시		나 아 아 아	
		권리															
	平	7 구															
	中	장 양															
弘	소 유	K ├ <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패키 20
		왕略	지승철	국(건설 교통부)	지상덕	지상배	지칠례	지하수	김미란	지혜면	지혜미	지승현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지상덕	지상배	지칠례
	소유권	기타	8/144		91/9	4/16	1/16	1/16	12/144	8/144	8/144	8/144			6/16	4/16	1/16
	보기 인크 1	다. (m. (j.m.	709	48				122					135	179		2,048	
	K 1	$\overline{}$	709	48				122					135	179		2,048	
		포1 <u> </u>	<u>전</u>	버				(水					버	버		<u>동</u> 기	
		시 전	子 571 -3	구 동 -4				7-270					47 42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7 575 % -4		75 575 575 575	
	소재지	-1	나라 아막 카					ilu 중호 구도	<u> </u>				라 호 字 字 子	라 왕 왕 유		라 중 주 구	0
	을 함 1	탄 어	16	17				18					19	20		21	

	드		別の社	改る	設备	改革	おるよう	別を当る	改革	別る社	おいは	別の社	別の対	別る	中	7오픈 리아 c	現るも
	ə	관심															
	軍	소															
	村	平。															
₹%	소 유 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수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란 금천구 시흥동 915-24	련 금천구 시흥동 915-24	미 금천구 시흥동 915-24	현 금천구 시흥동 915-24	식 금천구 시흥동 571	7] 금천구 시흥동 571	식 금천구 시흥동 571	정 금천구 시흥동 571	원 금천구 시흥동 571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 1878-8 대립아파트4단 지 1309-101			7 고층수광아파트 1222-503	원 금천구 시흥동 575-3
型		₹°	지층수	김미	지혜	지혜미	지승현	문덕식	[- 도병기	문진식	무수정	문채원	무덕식	문 장	į.	가 B	문채원
	수유권	판	1/16	12/144	8/144	8/144	8/144	3/14	2/14	2/14	2/14	2/14	3/70	3/70	Ţ	3/10	3/70
	교 연구	EL EL EL										55					
												153					
		-편 - - 전										575					
		수 <u>논</u> 										- 1 - 1 - 1 - 2 - 2					
												yp.;	/				
	당	권리 관계															
	冞	소															
	中	상명															
安本	소 휴 자	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총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상	급천구 시흥동 571 고최고 시흥도 571	사 사 대리 사	1309-101 금천구 시홍동 575-3	경기 광명시 하안동 110 고 층 주 공 아 파 트	1222–503	금천구 시흥동 575-3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 동755 백마마을 102-802
·	,	성명	지층수	김미란	지혜련	지혜미	지승현	문덕식	문병기	문진식	다 수 생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 ~	12.13.13.13.13.13.13.13.13.13.13.13.13.13.		문채원	문 시 식
	소유권	지부	1/16	12/144	8/144	8/144	8/144	3/14	2/14	2/14	2/14	3/70	3/70	3/70	5	3/70	3/70
	면이				2,048							55					
	K 1	₹ <u>(</u> E			1 2,048							123					
		기번 기반		ļ.	5 라							575					
	소째지	-			구 하 구 구 사							心 心 小					
		탄 어			21 F.A.							71 33					

	비고		単っ 名 子。 合	明らる	別が高	明成	まる。	まる。	引を記する	明らずる	まる。	現る記号を	明る場合	됐 왕양	名を発
	증	권리													
	更	선													
	中	弘													
F0	÷	주소장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 두동 755 백마마을 102-802	광명시 소하동 8		광명시 소하동 8	*하동 344	울 동작구 대방동 501 림아파트 103~804	울 동작구 대방동 501 림아파트 103~804	울 동작구 대방동 501 림아파트 103~804	울 동작구 대방동 501 립아파트 103~804	광명시 소하동 949-9 명지빌라 라동 101호	광명시 소하동 949-9 명지빌라 라동 101호	명시 소하동 949-9 지빌라 라동 101호	광명시 소하동 929-3
型	4	왕	문진식 10 두 34	강석수 광	국(건설 교통부)	강석수 광	김광남소	사회중 교	사회종 대	사화종 대	사회중 대	노재송 명광	나 과 아 교	노재송 명	노 과 왕
	수	기부 기부	3/70												
	년 2교	[변속 (m²)		4	439	154	92	6	18	83	83	02	153	88	17
	고 장	(m ²)		4	439	151	36	6	18	88	66	02	153	87	71
	1	카		□□	松	☆≖	전	幺	赵	전	图	쩟	图	전	전
		型		574	766	574	574	574	574	. 574 13	574	574	574 -19	574	572
		소재지		나 하 하 유	나 사 사 사	나 사 사 사	나 사 사 사 사	나 사 사 사 사	나 하 하 사	나라 하하다 사라	- - - - - - - - - - - - - - - - - - -	급천구 시흥동	나 하 사 사 자	급천구 시흥동	라
	ə	권리 관계													
	枣	주소													
	中	전 연													
	₹	섟		8 왕(소하동 8	4:	103~804 트 103~804	작구 대방동 501 -트 103-804	작구 대방동 501 드 103-804	4구 대방동 501 트 103-804	소하동 949-9 } 라동 101호	소하동 949-9 라 라동 101호	시 소하동 949-9 밀라 라동 101호	소하동 929-3
与交	수	ĸ⊢		광명시 소하		광명시 소	소하동 344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1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1	광명시 소하 명지빌라 라	광명시 소하 명지빌라 라	광명시 명지빌	상명시
	선	성명주			국(건설 교통부)	云	바이	서화종 대립아파.	서화종 대립아파	서화종 대립아파	서화종 대립아파	노재송 명지발리	노제송 명지발	관측	图
		왕		유연기	국(건설 교통부)	광명시	선	华中	华型	香草	* 'D	HO HO	HOHO	양연	华岛人
	일 소유권	왕		유연기	국(건설 교통부)	광명시	선	华中	华型	香草	* 'D	HO HO	HOHO	양연	상명시
	지 편입 소유권	(m²) (m²) 지분 성명		강석수 광명시	439 439	154 154 강석수 광명시	26 26 김광남 소하동	9 9 g	18 18 사회중 대	128 12	99 99 시화종 ^사	70 70 노제웅 <mark>광</mark>	153 153 上州舍 ²⁶	87 87 노재왕 명정 명지	71 71 노제웅 광명시
	지 편입 소유권	지꼭 역 면역 지분 성 명 (m²) (m²)		답 4 4 강석수 광명시	천 439 439	답 154 154 강석수 광명시	전 26 26 김광남 소하동	전 9 9 시회 종 다	전 18 18 시화종 ^사	A 58 58 A 4 章 4 日 4 日 4 日 5 日 5 日 5 日 5 日 5 日 5 日 5 日	전 99 99 시화종 ^사	전 70 70 노제웅 <mark>광</mark>	전 153 153 노제웅 ²	전 87 87 노제웅 명치 명치	전 71 71 노재웅 광명시
	지 편입 소유권	목 역 면역 지분 성 명		4 4 강석수 광명시	439 439	154 154 강석수 광명시	26 26 김광남 소하동	9 9 g	18 18 사회중 대	128 12	99 99 시화종 ^사	70 70 노제웅 <mark>광</mark>	153 153 上州舍 ²⁶	87 87 노재왕 명정 명지	71 71 노제웅 광명시

	피기		はる名	開る場合	明らる	明な事	まる社	明らず	関を発	明らずる	明らずる	まる。	関係	明らる	まる。	おる
	하	권리														
	平	소														
	中	晋														
		₹%			-31	ကု	필	호계 아 ()	-24	-24	-24	-24				
杈	유	к ⊢ ∢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 813 호계이편현세상 (6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巫	선	포°	대한주 택공사	대한 대상수	지상덕	지상배	지칠례	지 수 수	김미란	지혜면	지혜미	지승현	유교수	문병기	- - - - -	문수정
	수	기타			6/16	4/16	1/16	1/16	12/144	8/144	8/144	8/144	3/14	2/14	2/14	2/14
	문 연구	라. (m)	22	88				136				ı		8	8	I
	고 장	(m ₃)	22	88				136						8	3	
	1	사 가	첫	전				전						7	쇤	
	K	-퐈	573 -3	572				575						ŀ	2° C	
		소재지	급천구 시충동	나 사 사 사 사				できる子子を						ر ا	in 소항 구字	
	ə	권리														
	柬	к⊢ <														
	中	주 원														
弘	소 휴 작	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금천구 시흥동 828-31	금천구 시흥동 928-3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맹리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현세상 ④ 104-2403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915-24	금천구 시흥동 571	급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금천구 시흥동 571
-4	~	주 주	대한주 택공사	대한주 택광수	지상덕	지상배	지 함 를	전 수 수	김미란	지혜면	지혜미	지승현	문덕식	문용기	문진식	문 상 정
	소유권	기부			6/16	4/16	1/16	1/16	12/144	8/144	8/144	8/144	3/14	2/14	2/14	2/14
	보기 인교 ((m²)	22	88			<u> </u>	136		I	I	1		8	L ₹	I
	K 1	₹ (ÎII)	22	88				136						8	3	
		소 가	첫	전				전							<u>を</u> 力	
		스	573 -3	572				575							c/c -3	
	<u>면</u> 소재지	ol	- 12천구 시축동	가하다				사라 수 우 수							~ 하 수 구 나 나 나	
	<u>의</u>	라 어	35	8				37						E	8	

	피기		明らずる	開る場合	別所	明らる	明らずる	明らずる	明なま	가 파 과	부바수	가 파파수	부바수			
	증	바라														
	〒	소														
	中	7/1 ©TF														
₹%	사 사	K⊢	금천구 시흥동 571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8-8 대림에 4단지 1309-101	급천구 시흥동 575-3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 1222-503	금천구 시흥동 575-3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02-802	광명시 소하동 8							
型	선	平°	문채원	문덕식	판소 장	문병기	문채원	문진식	강석수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 교통부)	국 (제무부)			
	く 。 た		2/14	3/70	3/70	3/70	3/70	3/70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記			8	ì			6	-	234	497	634			11 356
	지 전	(III)			20	ì			6	-	234	497	634			11 356 11 356
	1	<u> </u>			不	J			力皿	型	松	枣	전			
	K	型			575	J.			574 -9	669	670	671 -7	671 -4			
		수 작고			다. 사사 다	수 ~			라찬구 시흥동	급천구 시参동	- - - - - - - - - - - - - - - - - - -	급천구 시参동	라 시 하 자			~ 国
		유유														
	平	κ⊢ 소·														
	中	玉o 玉o														
弘	수 유 자	⊀ ⊢	금천구 시충동 571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8-8 대림에 4단지 1309-101	금천구 시흥동 575-3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 1222-503	금천구 시흥동 575-3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02-802	광명시 소하동 8							
		곳°	문채원	문덕식	판 상	단명기	문채원	문진식	강석수							
	소유권	포	2/14	3/70	3/70	3/70	3/70	3/70								
	#P 1	면작 (m²)			8	i 			6							11 356 11 356
	K 1	$\overline{}$			8				6							11 376
		 시			不											
		도 파			575				574							
	소째지				라찬	/ 0 <			급천구 시흥동							\. □
		판) 어			85				83	9	4	42	64	44	42	

지 장 물 조 서(변경)

	건뉴		광명시구간	광명시구간		광명시구간	광명시구간		광명시구간	광명시구간							
₩	: 유 자	사			~								~~~				
	선	주 주			조경주외3			박명수			박영순	찬인배	이우저의13	0 1	8 상 ()	권희단 94	[일시회
	个字	(m2)			33.0			13.0			1.0	9.0	2.0	144.0	11.0	48.0	12.0
併	구조 및				목조/슬레이트			목조/슬레이트			플라스틱/플라스틱	목조/슬레이트	목조/pvc슬레이트	블록/슬레이트	패널/패널	블록/슬레이트	블록/pvc슬레이트
	물건의	冬			건물			건물			이동식화장실	건물	창고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지면				574-16			574-17			574-17	574-16	574-17	574-17	574-3	574-17	574-17
	소유자	子						서울시 급전구 시호1도 574-3	0 10 0 10 1								
云		で で						전 용호									
	小部	(m^{i})	9.0	10.0	33.0	30.0	71.0	13.0	64.0	0.9		9.0	2.0	144.0	11.0	48.0	12.0
力	구조 및		블러스래트	블러스래트	블러스래트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목조스레트	블럭스래트	블럭스레트		목조스래트	블러스레트	블럭스래트	샌드위치판 녤	블릭스래트	블럭스레트
	물건의	冬亭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参口	건물	건물	건물	건물
	五 マ		500-1	500-1	2-992			574-17				574-17	500-1	574-17	574-3	574-17	574-17
	수세시		급천구 시흥동	- - - - - - - - - - - - - - - - - - -	다 장 아 아		7	다 소 한 한 다 나	0			라 사 수 수 주	금천구	<u>~</u> %	- - - - - - - - - - - - - - - - - - -	라 사 수 우 유	금천구 시호도
년 건	고 교 어	1	П	2	ಣ	5	9	6	10	11	7	8	12	13	14	15	16
メメ	는 전 전	1	1	2	က		•	4				5	9		7	∞	6

	딘																	
	유 주	주																
	선	상	이경하 외1	박만희 외3	김태형 의1	김종영 외1			김선주	김선일	김은미 외3		시계구		소 요 소		김광남	
TO TO	4000	(m2)	20:0	41.0	34.0	16.0	26.0	7.0	15.0	15.0	15.0	12.0	22.0	12.0	105.0	2.0	4.0	57.0
压	구조 및		조국/동남	블록/슬레이트	블록/슬레이트	조노/눌류	철기둥/천막	철기둥/천막	목조/슬레이트	철판/함석	블록/슬레이트	목조/pvc슬레이트	블록/슬레이트	슬레이트	구성/누리	눌류/눌류	눌류/눌류	저벼독/외증
	물건이	冬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창고	샹고	가건물	건물	건물	가건물	건물	予発	건물	화장실	상고	거품
	五		574-4	574-4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11	574-11	574-11	574-11	574-10	574-18	574-18	574-18
	소유자	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20-45	서울시 금천구	시총1동	874-10
云		장 땅													김광다		심인섭	
	小。	(m^i)	20:0	41.0	34.0	16.0			15.0		21.0	12.0	16.0	12.0	105.0	2.0	4.0	57.0
☆	구조 및		목조스레트	블럭스레트	블러스레트	블러스레트			빌러스레트		빌러스레트	샌드위치판 별	목조스래트	목조스레트	블러스래트	블럭스래트	블럭스레트	부러기와
	물건의	冬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가건물		건물	상업사	건물	상고	상	화장실	상기	거품
	五 五		574-4	574-4	574-3	574-3			574-3			574-11			574-10		574-18	
	수~~		라찬구 시参동	라찬구 시송동	라 사 사 사 사	라 사 사 사 사			라 사 사 사 사			다 장 홍 나 봐	0		다 소 ** 다 봐	1.0	마 선수 나는	0 0
마	교 등 등		17	18	19	88	21	23	83	24	23	38	27	8	83	98	31	સ
メス	는 정		10	11	12	13			14		15				16		17	•

	교																				
	야																				
	소 전 교																			무사용	
严	수 명 (m2)	20.0	13.0	16.0	34.0	1.0	15.0	49.0	43.0	64.0	269.0	405.0	469.0	517.0	550.0	62.0	63.0	0.69	53.0	8.0	0
五	나 수 당 보	콘테이너	콘테이너	w 口,	강봉조+비닐	목조/목조	콘테이너	강봉조+비닐	블록/와급	블록/슬라브	エコ /ケー										
	を寄る事	창고	상고	계근대	하우스	화장실	창고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하수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하수스	하수스	하우스	건물	건물	7
	기관	574-14	574-15	574-19	574-19	574-26	574-26	572-3	572-5	572-3	575-5	575-5	575-5	575-5	575-5	575-5	575-5	575-5	575-6	575-6	, L
汝	84 유 사 사 수																			대 사용	
,	小 (画)																		26.0	8.0	0
☆	다. 작 수 교 전 수																		블럭스레트	블럭스래트	# 2 2 기
	물건의 용 류																		건물	건물	7 1
	지면																		0	0_0/0	נו
	수 본 도																		,	라 존 후 주	0
	전 전 성		82	r8	88	37	88	83	9	4	27	3	4	4	97	47	8	67	8	51	6

	피고																
	유가	소															
	섟	왕			권이순의5			권이순의5	송인영 원5	황희선 의10	송연이 원5	이옥슈 원3	김선옥 외1	타경진 외2	채미순	마혜원 외2	케미수
天~	个	(m2)	30.0	4.0	38.0	18.0	6.0	16.0	72.0	90:0	41.0	24.0	23.0	47.0	12.0	29.0	0.6
五九	무 조구		철골/천막	알루미늄샤시	블록/슬레이트	철끌/천막	철골/천막	목조/함석	목조/목조	블록/슬레이트	목조/슬레이트	블록/슬레이트	블록/슬레이트	목조/목조	목조/목조	포늄/포늄	五乙/五乙
	물건의	冬	상고	孝 秦	건물	京	상고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기디
	五		5/2-2	575-5	766-4	766-4	766-4	62-992	671-4	671-4	671-4	671-4	671-4	671	670-1	670-1	670 1
水	상 유 자	1) 성명 주 소	30.0		38.0	18.0	0										
☆	구조 및 수		골조립시		럭스래트	철골조립식 18	철골 조립식 6.0										
	물건의	שְׁנוֹ	천막 철		건물 클	가건물 출	가건물										
	五 石		2-575		766-4	766-4	766-4										
	수 ※ 도		급천구 시항동		- 1 사 시 수 소 시 수 소 소	- - - - - - - - - - - - - - - - - - -	나 사 사 수 동 다										
건	스 포 파 씨	١	33	R	F8	28	27	82	23	99	61	62	83	64	f8	99	5
X X	선	ı	19		20	21	22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조서(변경)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띠										누락분 추가	누락분 추가	누락분 추가	누락분 추가	
	자	주소													
	소유	성명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제 무 부)	
स्०	(m²)	편입	48	135	179	1,708	76	439	268	358	П	234	497	634	1503
田	면적(m²)	공부상	84	135	179	1,708	26	439	368	358	T	234	497	634	1503
	기도		버	버	버	壓	짟	짯	전	전	松	짯	冞	전	
	7 17		570-4	782-3	575-4	269–3	566-4	766-29	574-16	571-4	669-4	670-3	671-7	671-4	
	人加ス	등	라 장 왕 왕	나 사 사 사 자	나 사 사 사 자	라 사 사 종 동	나 사 사 사	나 사 사 사 소	라 사 사 사 자	라 사 사 사 자	라 사 사 사 자	나 사 사 사 자	는 장 사 사	나 사 수 사 주	٠ ا
		주소													
爻	소유자	성명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m³)	를 라	8	135	179	1,708	26	439	368	358					2 997
☆	면적(m²)	공부상	48	135	179	1,708	26	439	268	358					2 997
	기도		버	ᄖ	버	포	松	松	전	전					
	기파	<u>-</u>	570-4	782-3	575-4	569-3	566-4	766-29	574-16	571-4					
		\ \ \ \ \ \ \ \ \ \ \ \ \ \ \ \ \ \ \	라 왕 왕 종	라찬구 시흥동	- - - - - - - - - - - - - - - - - - -	급천구 시흥동	라 사 사 사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と ん え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ん	라찬구 시흥동	라찬구 시항동	라찬구 시행동					イ
77 0	을 함 등		П	2	co	4	ರ	9	7	∞	6	10		12	

구 고 시

중구고시 제2009-5호신당7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지정의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44호(2006.1.5) 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중구 고시 제2007-24호(2007.3.29), 중구 고시 제 2006-54호(2007.6.28), 중구 고시 제 2008-17호 (2008.3.27)로 정비계획변경 결 정된 신당제7주택재개발의 정비계획과 구 역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2260-1858)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중 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신당제7주택재개발 사업(변경 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m²)				
시성구군	구력의 명정 	<u> </u>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당7주택재개발구역	서울시 중구 신당동 45번지 일대	51,850	증)784	52,634		

다. 변경 사유

- 1) 동화로길 중 폭8m~12m를 12m로 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함.
- 2) 존치하는 택지(교회)중 금호동길에 접한 국공유지(대)26㎡는 도로 조

성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하고 어린이공원 계획선을 면적변경 없 이 조정 등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변경 없음)

구분	명 칭	면적(㎡)					
ੀ ਦ	[d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51,982	-	51,982			
중구 신당동 45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652	-	652			
	합계	52,634	-	52,634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율(%)	비고
丁七		7 7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팔(%)	비포
	합 7	1	51,850	증)784	52,634	100.0	
		소 계	7,882	증)810	8,692	16.51	
		도로		증)810	5,128	9.74	무상귀속
정비기반	공원 공원		3,262	-	3,262	6.20	무상귀속
시설 등	· 녹지	공공공지	302	_	302	0.57	무상귀속
		계	3,564	-	3,564	6.77	
		소 계	43,968	감) 26	43,942	83.49	
		택 지1	39,411	-	39,411	74.88	분양주택용지
택지	택 지2		4,010	-	4,010	7.62	임대주택용지
		택 지3	547	감) 26	521	0.99	종교시설용지 (존치)

- 바.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변경)

결	저			규모			사용	연장	위	치	주요	최초	
구 -		비ㅇ 기끄	류 별	번호	폭원 (m)	기능	형태	(m)	기점	종점	경과지	러조 결정일	비고
	기정	중 로	2	12	15~22	집산 도로	일반	1,588	신당동 광장	금호동 고개	-	-	
	변경	중 로	2	12	15~22	집산 도로	일반	1,588	신당동 광장	금호동 고개	_	_	일부구간 폭원변경 (신당동 45-180 도로편입)
	기정	소 로	2	7	8	국지 도로	일반	225	신당동 52-212	신당동 47-36	=	-	
도시	기정	소 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481	신당동 314-56	신당동 346-272	-	-	
계획 시설	기정	소 로	2	_	8	국지 도로	일반	60	신당동 349-79	신당동 349-107	I	-	
	기정	소 로	2	8	8~12	국지 도로	일반	350	신당동 282-65	신당동 41-71	ı	-	
	기정	중 로	2	(1)	15	집산 도로	일반	120	신당동 294-36	신당동 290-139	-	-	
	기정	소 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134	신당동 290-138	신당동 282-29	-	-	
	기정	소 로	3	(7)	6	국지 도로	일반	81	신당동 45-285	신당동 838-1	-	-	

※ ()는 도로결정조서의 미등재로 임의로 표시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TT	명칭 세분류		귀시	[번역(III)	결정일	비끄
도시계획시설 -	공원	어린이공원	신당동 45-68일대	3,262	_	
조시계획계절	공공공지	쌈지형공지	신당동 45-47일대	302	-	

- ※ 어린이공원 선형 변경 (면적변경 없음)
 -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결정 구분	명칭	면적(m²)	목지 명칭	十七 면적 (m²)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비고
기정	중구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850	-	-	중구 신당6동 45번지 일대	404	1	-	-	403	
변경	중구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2,634	-	-	중구 신당6동 45번지 일대	404	1	_	-	403	

※ 기존의 종교시설 존치

2) 건축시설계획(변경)

권과	구역구	분	획지	시구분		어머거		기체이	0 24 0	支入
결정 구분	명칭	면적 (m²)	명칭	면적 (m²)	위치	연면적 (m²)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층)
	중구			39,411	신당6동 290-80번지 일대	118,93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6 이하	15 이하
기정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850	택지2	4,010	신당6동 44-11번지 일대	13,479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6 이하	15 이하
	707119		택지3	547	신당6동 45-37번지 일대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용적률· 건폐율·높이 계획				
	중구		택지1	39,411	신당6동 290-80번지 일대	123,263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6 이하	15 이하
변 경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2,634	택지2	4,010	신당6동 44-11번지 일대	13,479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6 이하	15 이하
			택지3	521	신당6동 45-37번지 일대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용적률· 건폐율·높이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아. 사업예정시기(변경 없음)
- 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없음)
- 카. 변경 지형도면 : 중구청 주택과에 비치.

◈ 광진구고시 제200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8-46('08. 11.2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능동 369-2~320-74호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2008-835호(2008. 12.26)로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7854)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총 사업규모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능동 369-2~320-74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능동 369-2~320-74호간 도 로개설공사 	•폭원 4m, 연장 40m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8-46호 (2008.11.27)	

- 다.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광진구 자양로 150)
- 라. 사업의 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 도로과(☎450-785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Kł
K
뻐

사 업 명 : 능동 369-2~320-74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토지조서

7 3	اح آلد کم	[H [-	ק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명세		1 ਜ
2 크	₹ ₹ ₹	<u><</u> <u>1</u>	<u> </u>	다 (표)한	で 形	사	で で で	κ⊢ ≺Վ	권리의종류	子は	1
					김동추	중곡동 160-10					
					김동숙	광장동 145-8 위커힐@25-401					
					건울뜻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88 에스케이뷰 101-1202					
\vdash	광신구 아동	369-22	ØП	R	김동윤	강동구 명일동 32 명일엘 지@101-724	는 동 전 교 호	능동 160	가치분	ᆔ	
					김윤순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 을 227-203					
					박상희	중곡동 123-10					
					김보라	중곡동 123-10					
					김기범	중곡동 123-10					

62

٦. ټ										
	권리의종류	근저당	근처당	17 % CT.	o -	근계당	나 정당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٢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 @214-402	송파구 잠설동 101-1 우	성@ 22-1107	중랑구 신내동 804 신내 동 경남아니스빌 103-104	노원구 상계동 766-1 미 도@13-614			
	주 주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종로1가지점)	김재철	소 고 한	<u>-</u>	ക 장 다	김수경			
소 수 수	ĸ ├ ≺┤	과청시 부립동 49 주곳@	731-408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 731-408				
	장 면	소 표 유 구								
正 对(…")		105								
7 7	<u> </u>			世						
ب م				369-24						
اتالب کم	<u>₹</u> ₩			광진구	 0 0					
7 7	다			2						

₹ КН ᄭ oku

사 업 명 : 능동 369-2~320-74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물건조서

		ı	1				_	
	디							
	사 의 마 마 마	근처당	근처당	727	7 <u> </u> 30	근저당	근저당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ν ⊢ <4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 @214-402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	22-1107	중랑구 신대동 804 신대동 경남아너스빌 103-104	노원구 상계동 766-1 미도 @13-614	
	形 %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종로17지점)	김재철	호 기 추	<u> </u>	최정민	김수경	
# X	κ⊢ ≺₁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 731-408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	731–408	능동 370-3
~ 4	で で		소 표 교			조민주		华密
小	(m²)	11		ر د	Ţ		۲ ۲	က
4	京市	요 설 첫			시멘니티가요.		৯	요기 선 선
다 전 전 전	n kfo 기 기 기	호 호 주 · 전 · 전	-	바바		K 型		
	전 된		\	6	308-3			369-10
	소째지			۲ بر	 0 0			기o 아
	8년 교			•	-			2

◈ 성북구고시 제200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 1. 건설부고시 제273호(1982.7.15)로 도시계 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37호(1998.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07-461호(2007.07.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91호(2007.10.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 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 지과(☎920-33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성북구청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면적 : 15,101 m²(변경없음)
- 다.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2008.12.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2009.03.31일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게 재생략(변경없음)

♦ 성북구고시 제200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51호(1994.12.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68호(2008.5.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1호(2009.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열람된성북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 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 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 지과(☎920-3396)에 비치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성북구청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사업의명칭 : 성북근린공원조성
- 나. 사업의 면적 : 37,124m²
- 다. 사업의 시행자 : 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09.12.30일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 Kł $\overline{\mathsf{K}}$ 뻐

○ 사업시행자 : 성복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성북근린공원 조성)

					4				4	
1 ?	면				616-766에서 분할				168-275에서 분할	
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이해관계인	罗罗									
	۲۲ ۲۹									
소휴자	天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동구학원	서울특별시	사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동구학원	
<u>4</u>	κ ⊢ ∢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동 168-27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동 168-275	
를 다 다	파. 소.(imi)	2,507	175	168	1,831	12,344	12,635	6,100	1,364	37,124
마다	파 (mi) 소 (jm	2,507	175	168	1,831	12,344	12,635	6,100	1,364	
7	<u> </u>	왕	내기	대기	왕	심야	심야	임아	华山	
<u>한</u>	지번	616- 371	616- 380	616- 386	616–1055	168- 274	168- 294	168- 310	168- 313	
	哲の	문	는 한 라	H 연	H 상	상	상	소 파	% 파	
	요) 판	1	2	cc	4	2	9	7	∞	平

8

₹ Kł 糽

○ 사업시행자 : 성복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성북근린공원 조성)

	비기	경계담장 (616-766)	경계담장 (168-275)
7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이해관계인	편 주		
	κ⊢ <		
	平 7°	후 교육 동구축원	후교법인 동구착원
소유자	ν.⊢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27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275
	고 아	ব্	ব্য
	中	1	1
L K	## ###################################	<u></u> 소	세면조
고 다	き える さ 1 ロド	선 선	다. 아
<u> </u>	4 K 일 조 환	돈암동 616-1055	성북동 168-313
	8년 포	-	2

♦ 강서구고시 제200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건설교통부고시 제243호('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3호(2001.6.11)로 최초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7 호(2008.12.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되고,
-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4-27호 (2004.4.16)로 실시계획인가(최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8-19호(2008.3.20)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9-10호(2009.1.8)로 열람공고를 마친 도시계획시설 봉제산근 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2월5일강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 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 화곡동 산5-5 번 지 외 14필지
- 다. 사업의규모 : 당초 29,945㎡, 변경 129.291㎡
- 라. 사업의내용: 자연체험학습원, 노인복 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동네뒷산공원 화 사업 등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0. 12.

31

- 사. 변경내용 : 사업대상지 추가에 의한 토지조서 변경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자. 관련서류 비치 : 서울시청 공원조성과 (☎2115-7597)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2657-8687)

K 구
<mark>사</mark> 용할
멂
外

1	7													
		권리의 내용												
	계인	吗 %												
	이해관계인	주소 성망		산										
변경후		多多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설 설 왕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型	소유자	х <u>+</u> 4-												
	0	- 분 - 분												
	m²)	<i>라</i> 2=	129,291	4,113	1,295	1,547	1,544	2,494	6,278	1,097	7,627	104		
	지적(때')	計 紹	129,680.1	4,113	1,295	1,547	1,544	2,494	6,278	1,097	7,627	104		
		권리의 나용												
	이해관계인	多品												
	70	不下												
점		多公		사왕시	서울시	서울시	사용시	사왕시	(참 (참 (원	삼왕기	사왕시	서울시		
변경전	소유자	Κ⊢ 소낙							서울시 중구 주자동 43-2					
	이	= 판												
	(m²)	重	29,945	4,113	1,295	1,547	1,544	2,494	8,758	1,097	7,627	101		
	지적(m²)	파	87,263.1	4,113	1,295	1,547	1,544	2,494	8,758	1,097	7,627	104		
	지	-		취야	취야	취야	심야	심야	심야	취야	취야	심야		
	云 连	1	11필시	화 구 상 - 상 - 5	화곡동 산22-32	화구동 산41-6	화곡동 산41-10	화곡동 산43-21	화구동 산12-6	화구동 산선-7	화곡동 산43-20	海 时 中		
	五, 罗,	נ	합계		2	က	4	гO	9		∞	6		

7	<u> </u>							李孙	李才	47
		권리의 내용					다 상			
	이해관계인	성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해된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변경후		성명	강서구	0 <u>斯</u>	김항식	수 목 학	신장설			이선주
亚	소유자	7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99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APT 226-14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AP T 221-140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호자촌 110-602	사울시	사울시	서울시 중구 시다도 139-778
	o H	= 발		1/4	1/4	1/4	1/4			
	n²)	海。	346			56,929		2,480	1,020	7,069
	지적(\mathbb{m}^i)	나	735.1			56,929		2,480	1,020	2,069
		권리의 내용			다 <u>수</u> 보		다 소 라			
	이해관계인	성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0	첫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시 중구 태평도2가 120			
경전		성명	강서구	0 本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を	김창식	유재하	신장설			
변경전	소유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99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 APT 226-14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 APT221-140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효자촌 110-602	서울시	서울시	
	o H	수		1/4	1/4	1/4	1/4			
	m²)	쩐	346			1,020				
	지적(때)	나	735.1			57,949				
	전	-	다. 다.			이 이 다. 나이 아마		10 to 1	10 to 1	심야
	大 进	J -	화곡동 680-50		1	승존동 산24-2		화구동 산42-8	등촌동 산24-31	2017年
	五, 安,	J J	10			Ħ		12	53	14

Ţ	<u> </u>				
7		76	جت ا		
		관리의 내용	지상권	다 강	유
	이해관계인	多。	동원상호 저축은행	오김자	中路中
	이해된	۲۲ ۲۰	여수시 충무동 502-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 임광아파트 3-100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43-15 상지리츠빌 201
변경후		で で で		<u> </u>	
进力	소유자	Κ ⊢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828 상록롯데캐슬 1005~1607	7001 0001
	이	투			
	m²)	型品		35,348	
	$\lambda \vec{\mathcal{A}}(m^i)$	파		35,348	
		권리의 내용			
	이해관계인	る 品			
	Į (o	Ϋ́⊢ ≺ᢋ			
변경전		天 元 元			
强	소유자	Κ ⊢ ζ ↓			
	이	○ 는 파			
	(m²)	판			
	지적(m²)	파			
	전	-		10 0 T	
	云 王	<u>-</u>		화곡동 산22-4	
	五, で,			15	

물건조서 : 건물

										ı	
	山										철거완료
	소유자	7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2-5 현대A 101동 805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52 주공아파트 1110-11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60-16번지 16통 3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3-1	
변경후		が る で	김정희	김남진	심금택	정민숙	박상식	왕지원	김한기	황성패	
	사무면정	(m ²)	49.5	92.4	92.4	52.8	72.6	92.4	92.4	33	
	물거의 종류	를 구 상 전	산42-6 건물(스레트)	산42~6 건물(스레트)	산42-6 건물(스레트)	산42-6 건물(스레트)	산化(건물(스레트)	산42-6 건물(스레트)	산42-6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7	<u> </u>	À42−6	₹42-6	산42-6	산42-6	À42−6	₹42-6	₹42-6	산43-2 0	
	소유자	7.4. T.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2-5 현대A 101동 805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2-1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52 주공아파트 1110-11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60-16번지 16통 3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3-1	억 서울 강서구 화곡동 680-50
변경전		る品	김정희	김남진	심금택	정민숙	박상식	왕지원	김한기	홍성패	총순억
	파 1		49.5	92.4	92.4	52.8	72.6	92.4	92.4	33	33
	물거의 종류] - 子 ら 女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스레트)	건물(판자)
	7	<u> </u>	산42-1	산42-1	산42-1	산42-1	산42-1	산42-1	산42-1	산43-1	09-089
	수씨지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각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각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요 판		1	2	3	4	2	9	7	8	6

	디		철거완료	철거완료	철거완료	철거완료	철거완료
	소유자	주소					
변경후		주 연					
	공부면적	(m)					
	물거의 종류	子子 子子					
		지판					
	소유자	子仝	조문단 서울 강서구 화곡동 680-50	서울 노원구 월꼐3동 미성APT 12동 911호	박승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680-50	26.4 김정규 서울 강서구 화곡동 680-5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수곡2동 973-103
변경전		왕	조문단	& & 1E	박승근	김정규	26.4 김상오
	바.	면적 (m²)	33	33	83	26.4	
	물거의 종류	및 구조	건물(관자)	건물(관자)	건물(관자)	건물(관자)	건물(관자)
	2	시 판	02-089	05-089	09-089	09-20	02-089
	소재지		강서구화구동	강서구화구동	강서구	강서구	상사구
	유 관		10	11	12	13	14

◈ 강서구공고 제200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14)로 최초 도 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8-476호('08.12.26)로 도시계획시 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강서 구고시 제2001-64호('01.7.30)로 최초 실 시계획인가 및 강서구고시 제2008-19호 (2008.3.20)로 변경인가된 강서구 방화동 산1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꿩고개근린 공원에 대하여
-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9-11호('09. 1.8)로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공원조성과와 강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강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 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산110번 지 외 59필지
- 다. 사업의규모 : 94,874m²
- 라. 사업의내용 : 민속놀이마당, 벚꽃길 (가로공원) 등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바. 사 업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10. 12. 31.
- 사. 변 경 내 용 :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 른 사업 시행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 자. 관련서류 비치 : 서울시청 공원조성과 (☎.2115-7597)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2657-8689)

		T T	1											
			권리의 내용											
		계인	空											
		이해관계인	소 ኤ											
			KF.											
	16-	小	성명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이수진	소 슈 슈
	平0	¢	ふ											l I
	田	쉭	Κ⊢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8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롯데@2-608
		o H	하는			8	10		1	~	7	6	~	5,131 6/30
_		지적(때)	윤	94,874	7,702	198	1,235	27	1,071	2,073	337	1,329	543	
복		지작	나운	94,874	7,702	198	1,235	57	1,071	2,073	337	1,329	543	5,131
ᅜ			권리의 내용											
뻐		₹계인	성명											
	H 정 전	이해관계인	≺ ⊦											
			ĸ⊢											
		샤	상명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84	조감순
		` o =	< 4										고촌면 의 88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롯데@2~608
		선	κ⊢										김포시 신곡	を
		H O	기분	574	70.	198	1,235	27	771	773	337	1,329	543	5,131 6/30
		석(m²)	. 편리	74 94,874	202,7	198 1		22	1] 1,071	73 2,073	337 3		543 5	
		X	나	94,874	F 7,702		1,235		} 1,071	} 2,073		} 1,329) 5,131
		7 7			는 레야 0	를 -7	를 80 80	10 do b	5 7 got	40H 29	9 9 4 9	5 90¢	40H 9	190 P
		7	<u><</u>		방화동 산110	방화동 산110-7	방화동 산132-80	방화동 산99-5	방화동 산99-7	방화동 132-78	방화동 132-79	방화동 산98-4	방화동 산98-6	방화동 산107

성

〒

 \sim

 ∞

	7	더							
		권리의		다 삼 삼 청 정					
	이해과계이	下で		고양축산 업협동 조합					
امار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저동지점)					
수	-	で で	부소꾸	华龙	바귀천	바 수 선	# 건 양	부소소	서울시
五	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 930-7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1604-110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503-130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그린빌라 101~402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세종빌리지 5-30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시우드 7006	
	1	수	08/9	02/9	3/30	3/30	3/30	3/30	
	m²)	문 라							2,100
	지적(㎡)	파							2,100
		권리의 내용		다 관 소 정					
	이해꾸계이	形で							
平		k ⊢ √ 1		고양시 덕양구 고양축산 박노혁 성사동 696-4 업협동 (저동지점) 조합					
T.		で で で	누구구	수 &L	박귀천	유 상 성	부. 가 양리	사 수	서울시
丑	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미을 930-7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1604-1103	경기도 부천시 3/30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5/03-13/14	경기도 부천시 3/30 소사구 송내동 _{박옥선} 고린빌라 101-402	인찬 남동구 간석동 세종빌리지 5-30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시우드 7006	
	1	수 사	06/9	06/9	3/30		3/30	3/30	
	(m²)	<i>보</i> 기 으프				5,131			2,100
	2 2 2 2 2 2 2 2 2 2								2,100
		<u> </u>			,	0 0			임아
	7	기면			世 (本) (本)	산107			방화동 산107-6
								11	

						1		Г		Г	1
	T T	1								채무자 주식회사 성서원	
		권리의 내용								수 용 로 전 문 문 문	
	이해관계인	왕								(주)국민 은행 (종로5가 기업금융 지점금	
-Joh	이해	소								(주)국민 서울시 중구 은행 김영진 남대문로2가 (종로5가 9-1 기업금융	
灭。	ᅶ	상명	서울시	[<u> </u>	2 0 7	<u>선</u>	서울시			서울시
型	¢⊨	< +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5-36	
יית	선	ĸ⊢								서울시 성북동	
	0 H	는 기타									
	(m²)	변리	2,150	-	1,115		S	117		5,932	1,489
	지적(때)	나 운	2,150	-	1,115		70	117		5,932	1,489
		권리의 내용			다 관 관		다. 건 보 라	지수권 되고 되는 다. 건 당권		水 ま 子 を を ま	
	이해관계인	상			(주)서울 상호저축 은행		(주)서울 상호저축 은행	강서농 협동조합	5,932	=1 = 010	
전	이해	< < →			서울 강남구 신사동514-2		서울 강남구 신사동514-2	서울 강서구 강서농업 광진용 방화동 829-3 협동조합	5,93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자 사	성명	서울시	강대철	발 정 부	강대철	채정부	상지용		22 86 도	서울시
亚儿	산	个		사천시 정동면 송보파인& 204-402		사천시 정동면 송보파인& 204-402	경기도 포천군 화현리 660-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32-2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5-36	
	0 H	부		1/2	1/2	1/2	1/2				
	(m²)	편입	2,150				20	117		5,932	1,489
	지색(때)	나 운	2,150	-	C11,1	Ç	7C	117		5,932	1,489
	본		심야	100	T D	ጉ	5	古		6 년 1	심야
	지번		방화동 산108		산103-1		132-1	방화동 132-2		방화동 산102-1	바화동
	Ŧ T	년 년	12	C.		-	<u></u>	15		91	17

							Шо .					
	T T	1				추구구 라운호 이외진	박영은 기타 공동 담보 등					
		권리의 내용				지상권, 나 저 당권	다 유 사		다 사			
	이해관계인	衣 起				(주) 한빛은행	이촌2동 세마을 금고		이촌2동 새마을 금고			
-Joh	이화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원효로지점)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06-17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④ 이은광 이촌동206-17 102-1104					
Ko Ko	자	~ 면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구. 6	<i>।</i> - -	이수진	아아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가서구
压	수	∀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84	서울 용산구 촌동 대림& 102-1104			
	0 13	는 라 무 라				~ 0)	2	` 0			
		변의	99	156	092	1 2001	1,301	176	143	21	108	429
	지적(때²)	파	09	156	092	1,381		176	143	51	108	429
		권리의 내용				시 라 라 라 라	다 전 전		근저당 권			
	이해관계인	下 下				(주) 한빛은행	이촌2동 세마음 라고		이촌2동 새마을 금고			
전	이해	∀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원효로지점)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06-17		서울 용산구 이촌동206-17			
₩ 1	本	云 足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	 - -	이수진	아이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型	소	∀ -			,	서울시 용산구 이호도 메리 <u>의</u>	102-1104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44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 102-1104			
	0 14	투										
	(m³)	변	09	156	092	1 201	100,1	176	143	51	108	429
	지적(때)	바	하다 90 년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00,1	176	143	51	108	429		
	전		10 D	10 to 10 to 1	임아	0.0		입아	심아	五	입아	취하
	지면		방화동 산98-3	방화동 산98-5	방화동 산98-1	中郊石	샾110-1	방화동 산98-2	방화동 332-17	방화동 332-25	방화동 332-16	방화동 사111 1
	ਲ 교		18	19	20	5		22	23	24	25	36

		일 지부 수	969	808	사찬/ 1/2 송토 20	1/2	183	10	87	28	9	327	71	398
A 소 소	소유자	수 8 8 8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사천시 정동면 송보파인④ 강대철 204-402	포천. 660-1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이해된	K ⊢ ≺ 4				간 채정부 선사동 514-2								
	이해관계인	م م م الم				주)서울 3호 저축 은행								
	K	권리의 상부 내용	296	72		나 사 라 다	=======================================			7		327);
	지적(m²)	型。	96 280	208 208	Q		183 183	10 10	28	28 28	9 9	77 327	71 71	398 398
	0 14	는 분 분			1/2	1/2								
型,	삭	∀ ⊢ ≺┤			사천시 정동면 송보파인& 204-402	경기도 포천군 화현리 660-2								
* Fo	소	平 下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강대철	业 多 上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0	ν⊢ <				7 제정부 시작 3·남구 상호저축 1· 신사동 514-2 은행								
	이해관계인	平°				(주)서울 상호저축 은행								
		권리의 내용				다								
	ī	<u> </u>				공동담보 방화동 산103-3의2								

	F T	1								채무자 김영근	상동담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권리의 내용								유	다 소 보
	이해관계인	~ ~								야 수 수	바이유
1-1	이해	κ ⊢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102-3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음림픽 선수기자촌(3)?
₩ <u></u>	不	で で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u>াই</u> শূ	T-87
强	수	κ⊢ 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8
	о Н	후								1/2	1/2
	m²)	<u>면</u> 등	72	222	2,058	798	766	1,568	2,018		4,915
	지적 (m^i)	파	72	255	2,058	862	266	1,568	2,018		4,915
		유유								다 유 유	다 유 자
	이해관계인	平°								야 유 수	박연원
전		κ <u></u> -								"이화생 동작동102-3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320-1202
स्०	7	晋° で°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極	나용만
型	소	κ ⊢ <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8
	о Н	- 판								1/2	1/2
	m²)	<i>교</i>	54	255	2,058	862	365	1,568	2,018		4,915
	지적(때)	파	72	202	2,058	862	266	1,568	2,018		4,915
	7 7	<u> </u>	벌	일야	일야	임아	임아	일야	임아		100 0
	기파	<u></u>	방화동 산108-2	방화동 산135-3	방화동 산136-4	방화동 산123-7	방화동 산136-3	방화동 산138	방화동 산112-2		방화동 산136-1
면 면 성 성 88 88 88 88 89 년 42 41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ī,	<u> </u>	공동담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방화동 132-78에서 분할	방화동 132-79에서 분할	방화동 산98-4에서 분할	방화동 산98~6에서 분할	방화동 신98-3에서 분할	방화동 산98~5에서 분할	방화동 산98~1에서 부학
		권리의 내용	다 자 자 안		1	~-	~-	~-	~-	~~
	이해관계인	성명	조대진							
- 0 -	이해	Ϋ́ 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92현대 @413-1801							
天~	ᅶ	성명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型기	수	$^{\text{KF}}$								
	이			615	324	410	25	253	31	161
	지적(때)	표		615 6	324 3	410 4	25	35 2,635	1,331 1,331	161 1
	K	는 라오 라오	75 91	9	ec e	4		2,635	1,3	
		명 명 내용	스 나 쇼 소 차							
	이해관계인	₹%	구 조대진							
전	ρĺο	₹ 소	성남시 분당구 김용구 서현동92현대 @413-1801							
严	사	성명	건용 그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番り	수	$^{\text{KF}}$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8							
	о Н	후	4,915 1/2							
	지적(때)	편리		615	324	410	25	2,635	1,331	191
	지작	뉴운	4,915	615	324	410	52	2,635	1,331	161
	7 7		10년	심아	인이	일하	10 D	인하	6년 (40°B
	기파		방화동 산136-1	방화동 132-93	방화동 132-94	방화동 신98-9	방화동 신98-11	방화동 삼98~8	방화동 신98-10	방화동 산98-7
	7 T	다 다	45	46	47	84	49	22	51	25

	T T	1	방화동 산110-1에 서분할	방화동 신98-2에서 분할	방화동 332-17에서 분할	방화동 332-17에서 분할	채무자 김영근	공동담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공동담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삭110		
		권리의 내용			는 하 하 하	다 다 자 자	다 다 자	다 유 유	다 유 관		
	이해관계인	왕			이촌2동 새마을 금고	이촌2동 새마을 금고	유연수	바인원	조대진		
岒	이해	소			서울 용산구 이은광 이촌동206-17) 이은광 서울 용산구 이촌동206-17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102-3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92현대 @413-1801		
	자	성명	서울시	이수진	이은광	이은광	<u>이</u> 화생	7.8.7.8.7.7.7.8.7.7.8.7.7.7.7.7.8.7	- D 1		
压	수	κ⊢ 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84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 102-1104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 102-110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김포시 양촌면	수 나라 나라		
	0 H	는 판					1/2	2	1 î		
	(m²)	편	5,294	122	126	10		5,300			
	지적(때)	타	5,294	122	126	10		2,300			
		권리의 내용			유지	다 유 자		다 나 자 나 공			
	이해관계인	장 명			이촌2동 새마을 금고	이촌2동 새마을 금고		야 요 수			
소	이해	수			서울 용산구 이촌동206-17	서울 용산구 이촌동206-17		A울시 동작구 1 1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स्०	사	성명	서울시	이수진	수	하		(A)			
型	소	수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84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에 102-1104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림(A) 102-110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0 1	후						5,300 1/2			
	(m²)	A 라	5,294	122	126	10					
	지적(m²) 공부 평		5,294	122	126	10		5,300			
	7	발									
기판			방화동 산110-8	방화동 산98-15	방화동 332-26	방화동 332-27		방화동 산136-6			
	ਰੂ ਯੂ		53	72	FS	25		57			

	<u>ت</u>	4			
	_		5T1		
		권리의 내용	지상권		
	이해관계인	왕	서울시도 시철도 지상권 3 공사		
후	र्वि	자 소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		
	자	성명	至可班	권정안	7차구
면경	소	κ⊢ 〈쉬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40-40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17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50
	0 17	후	本个	K, U	* "
		전 전 지	6,420	9,108	12,168 12,168
	지적(때)	바	6,420	9),108	12,168
		권리의 내용	지상권		
	이해관계인	성 명 <u>권리의</u> 내용	표 용답동 223-3 공사		
	이해	4	성동구 223-3		
전		ĸ⊢	서울시 용답동		
灭	자	성명	(A)	면 상 아	7차구
五	소	쉭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40-40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17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50
		바	수 수	रिं न	사 수 수
	о Н		6,420	9)108	168
	지적 (m^{\imath})	표임			임아 12,168 12,168
		라	6,420	9)108	12,14
	7 7	<u> </u>	입아	10 to to	심야
	기파		방화동 산133	방화동 산129	방화동 산115
	7 7	<u>1</u>	58	59	09

지장물건조서(건물 및 분묘)

	더			A
	T			坐与
		상	미 상	ı
면정	소유자	7~ 소	미 상	ſ
	克田田石	-	[2]	I
	물건의 종류	및 구조	표	ı
		상	사 [ப	공진용
면 32	☆ ☆ ☆	소 수	-{} Гп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32-2
	공부면적	(m^i)	47]	26.4
	물건의 종류	및 구조	표	파
	지		산136-3	132-2
	소재지		강서구 방화동 산136-3	강서구 방화동 132-2
	병		1	2

한 관악구고시 제2009-2호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1(2008.06.05)호로 서울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건축과(☎880-3645)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2월5일관 악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일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 3. 사업의명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확충
-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 3,895,659m²

나. 사업변경 내역

1) 건 물

- 당 초 : 1,145,701.72㎡(207동) - 변 경 : 1,105,869.12㎡(208동)

2) 변경내용

가) 건물(증축)

구 분	건	. 축 면 적(m²)		비고		
1 1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H 12
대림국제관(137-2)		1,046.69	1,046.69		5,123.80	5,123.80	신축
양수장(117동)	140.0	183.60	43.60	140.0	183.60	43.60	개축
계	140.0	1,230.29	1,090.29	140.0	5,307.40	5,167.40	

- 5.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총장 이 장 무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신고일 ~

2009.12.30

-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권이외의권리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관악구 봉천동 산4-2일대	좌 동	학교용지	소유자 : 국(교육과학기술부) 재산관리관 : 서울대학교총장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공공 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해당없음

◆ 관악구고시 제2009-3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2호(2008.02.28) 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봉천지구중심 지구단 위계획 중 획지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 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09년 2월 5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 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세 부 내 용		нJ ¬
一 下 正	(도면번호)	위 치	면적(m²)	변경사항	비고
기정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 884-35	90.2	-	
변경	봉천지구중심	봉천동 884-35	88.7	대지분할가능선	
민생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 884-49	1.5	네시판일기중인	가 지번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남구고시 제2009-11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우리구 대치동 996-9호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 되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2월5일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0	і붜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	획내용	비고
ĩ	1빈	T 4 8	1 1	기 정	변 경	미끄
	1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대치동 996-9,-10, -11,-12,-13번지	 대치동 996-9,-10,-11,-12 -13번지 공동개발 ·주차출입구 : 후면 보차혼용 통로내 대치동 996-10번지 측 	 대치동 996-9번지 단독 개발 대치동 996-10,-11,-12 -13번지 공동개발 주차출입구: 전면 대치동 996-11번지(조건부)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내용

연번	구 역 명	위 치	조 건 내 용	비고
1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대치동 996-9,-10, -11,-12,-13번지	 대치동 996-11호 강남구 소유의 도로에 대해 매수가 가능할 경우 공동개발을 결정 보차혼용통로 개설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진입을 허용 	

□ 관계도면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2104-183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송파구고시 제2009-8호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구역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8(2005.12.15)호 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7번지(송파동 반도아파트) 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 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2월5일송파구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송파구 송파동 반 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구 역 의 명 칭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송파동 167번지	30,091.5	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 율(%)	비고
도시계획	계	30,091.5	100.00	변경없음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91.5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594.0	5.30	변경없음
8비기반시설	원	1,594.0	5.30	
획 지	소 계	28,497.5	94.70	변경없음
박 시	획지1	28,497.5	94.70	

라.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종류	세분류	위 치		면 적(m²)		비고
1 ਦ	기설등표	시판표	T 1	기 정	변 경	변경후	1177
신설	공간시설	어린이공원	송파구 송파동 167번지	_	증)1,594.0	1,594.0	기부채납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역 구분		획:	지구분	위치			정비기	배량계획(동)		りユ
구분	명 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1 イ ハ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송파동 반도아파트	00.001.5	획지1	28,497.5	송파동 167	7	-	-	7(신축9동)	_	공동주택
신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091.5	획지2	1,594.0	송파동 167				-		공원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 ⁷ 명칭	지 구분 면적(m²)	· 위치	용 도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m²)		적률 %)	높이 (m)	층수 (층)
신설	획지1	28,497.5	송파구 송파동 167	공동주택 (임대주택 포함)	5,831.94	20.46	70,285.79 (임대주택 연면적은 제외)	(임대	6.64 배주택 은 완화)	최고 82.65m	최고 28층
	획지2	1,594.0	송파구 송파동 167	공원	_	-	ı		=	-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	87.05m²(기준 297 m²	이하)			
주	택의 구	7모 및	 전용면적 85 	m² 초과 규	모의 건설	비율				21.54 %	
규모	모별 건	설비율	 전용면적 60 	~85m² o]ō	가 규모의 🌣	건설 비율	r			55.92 %	
			 전용면적 60 	m² 이하 규	모의 건설	비율				22.54 %	
건축	물의 4 관한 7	건축선에 계획	 남부순환로탁 주거환경 삼익아파트탁 주거환경 보 	보호를 위험 변:3m							

3)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계		공	동 주 택		비고
1 正	/4I	소 계	60m²이하	60~85m²이하	85㎡초과	1 11 12
인구수(인)	2,363	2,363	520	1,300	543	
세대수(세대)	794	794	171	444	179	

※ 본 대상지의 분양 인구 및 세대수는 1:1로 현황과 변동사항 없음 본 대상지의 임대주택 인구수는 가구당 평균 인구수 2.78명임

4) 공동이용시설계획

구 분	위치	변 경 전 (m²)	변 경 후 (m²)	비고
관리사무소		107.20	57.33	감) 49.87
주민공동시설		450.00	1,221.40	증)771.40
경 비 실		25.00	30.00	증) 5.00
노 인 정	송파구	100.00	113.11	증) 13.11
보 육 시 설	송파동	100.00	399.56	증)299.56
문 고	167	150.00	65.61	감) 84.39
어린이놀이터		1,050.00	1,010.32	감) 39.68
휴 게 시 설		4개소	2개소	감)2개소
주민운동시설		550.00	524.63	감) 25.37

■ 공동이용시설 변경사유서 :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바.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용 적 률 (%)	계 획 내 용
7]	존	188.25%	● 용적률 증가분 : 58.39% ● 증가분 25% : 14.598% ● 연면적 환산 : 4,159.92㎡ ● 임대주택 계획연면적 : 4,170.19㎡
계	획	246.64%	● 세대수 : 44세대 -60㎡이하: 7세대 -60∼85㎡이하: 24세대, - 87㎡ 13세대

- 사.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 한 계획: 변경없음
- 아.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변경지정고 시가 있은 날부터 1내 이내 착공 예정
- 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식 에 의함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9-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

- 1. 건설부고시 제432호('63.07.01)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 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 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 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 (2731-1493)에 비치하여 공고일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내에 종로구청(토목과)에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2월5일종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궁정동 13-3 ~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설결정	지적승인	비고	
종로구 궁정동 13-3 ~효자동 40-1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B=6m L=255m	건설부고시 제432호 ('63.07.01)	건설부고시 제432호 ('63.07.01)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장(종로구 삼봉길 50)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 세: 별첨
-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 주소, 성명: 별첨
- 아. 공람공고 기간 : 시보게재일부터 20일간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공 사 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ج بد بد		전 전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	শ ৩
			(m ²)	で で	κ⊢ 〈쉬	名	~ ~	사
종로구 효자동 40-4	古		19.8	이승주 문강분 국(국세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65-1	근저당권자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마포역지점)
종로구 효자동 내	吞		3.0	김석자	종로구 신교동 39-3			
종로구 효자동 대	舌	1	7.5	이만영	종로구 효자동 45			
종로구 효자동 대	舌		8.9	令 经 经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3층 304호			
종로구 효자동 대 48-1	舌		15.2	令 经 经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3층 304호			
종로구 효자동 50-30	舌		13.6	김동호	종로구 효자동 50-3			
종로구 효자동 50-31	舌		12.2	유심평	종로구 효자동 50-5	근저당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1014 -1 (오양지점, 신간석지점)
종로구 효자동	ਵਿ 		6 %	보 작	אט אוע איירא דורא	근저당권자	(주)조충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 (효자동지점)
50-32	5		77.07	 	0.00 이 자	근저당권자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효자동지점)

이 해 관 계 인	8 8 4	(주)서울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동대문지점)	(주)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청계4가지점)	(주)서울은행 중구 남매문로2가 10-1 (동매문지점)	(주)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청계4가지점)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 2가 120 (효자동지점)	청운동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9 서울시 종로구 중로구 수송동146-1			국(광화문세무서)	국(광화문세무서)	
	る。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압류권자	압류권자	
수	사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상도구 요사당 30~ <i>l</i>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د	1_0C 호사표 지구호	총로구 효자동 50-15	종로구 효자동 50-15	총로구 효자동 50-8	종로구 효자동 61-1	종로구 효자동 61-2 201호	총로구 세총로 60	종로구 효자동 62	총로구 효자동 62	총로구 효자동 62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晋º で	ト ド ド	(교 신 의	ア ア ネ	(교 소) <u>의</u>	신지희 외 7	신지희 외 7	이지열	변인식	圣기태	대한식량회사	<u> </u>	<u> </u>	노봉구 국(재무부)	수뿐이
수용면적	(m²)	-	F.: J	10	0.1	0.5	0.7	5.4	14.8	8.2	4.7	9.3	11.3	29.8	33.8
기다	<u> r</u>	ፑ	5	ቹ	5	古	古	亏	古	古	古	古	否	古	五
ر ب	₹ ₹	종로구 효자동	50-33	종로구 효자동	50-34	종로구 효자동 50-35	종로구 효자동 50-36	종로구 효자동 50-37	종로구 효자동 61-8	종로구 효자동 61-9	종로구 효자동 61-10	종로구 효자동 62-1	종로구 효자동 63-3	종로구 효자동 63-4	중로구 효자동
의 꼬	전	c	מ	Ç	2	11	12	13	14	15	16	17	81	19	8

해 관 계 인	BO 文		축 종로구 효자동 69-4 202호			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 181 (을지로 지점)				음행 중구 을지로 2가 50 (소사지점)	상호 중구 다동 103 :행	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청운동지점)	함증앙회 (중로1가지점)	은행 중구 남대문로 1가 14 (효자동 지점)	
0	ফ্		송 소 소			(주)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동부상호 ^{저축은행}	(주)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조충은행	
	名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소 유 자	K ⊢ ≺ 4	종로구 청운동 57-14	종로구 효자동 34-1 3층	종로구 효자동 71	종로구 효자동 73-3	종로구 효자동 73-4	강남구 신사동 555-36 3층 505	종로구 효자동 76-6	종로구 신교동 51-1	조 구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001 이사파 파이	사 가 가 다 127 1	6노T 요사6 10/-1	종로구 효자동 171	종로구 효자동 172-1
	で で	수명성	地	편 89 시	& 라 의 와 수	어	하	박정숙 외 11	윤상남	く 区 ゆ	ارا <u>ئ</u> ا	바요기	; ;o ;r	김충자	전제호 의 14 -
수용면적	(m³)	18.7	17.6	25.1	24.4	16.8	4.9	9.8	14.0	<u>د</u> تر	C.12	70	1 .7	2.9	54.1
7 1	<u> </u>	舌	古	古	舌	舌	舌	舌	舌	Έ	<u></u>	Έ		舌	古
اب ک	₹ ₹	종로구 효자동 69-9	종로구 효자동 69-10	종로구 효자동 71-3	종로구 효자동 73-5	종로구 효자동 73-6	종로구 효자동 74-1	종로구 효자동 76-6	종로구 효자동 92-1	종로구 효지동	100-3	종로구 효자동	167-4	종로구 효자동 171-1	종로구 효자동
의 판	쩐	21	22	23	24	25	36	27	28	6	 G	C	90	31	32

₹ Kł 糽 매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강정동 13-3*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물건의 구조 및 수용 교계
#
(1층) 블럭조 12.1
(2층) 블록조/슁글 9.1 이승주
가건물(1층) 블럭조 3.2 문강분
문 목조 14
장 벽돌조(2.1m) 1식 전재홍 외 14
(1층) 벽돌조/와즙 1.8 김석자
건물 (1층) 블럭조 3.1
창고(장독대) 블럭조 2.8 기초기
화장실(1층) 블럭조 2.4
가건물(2층) 블럭조 2.8
(1층) 벽돌조 0.6
문 철재 1시 송경화
장 벽돌조(2.1m) 1식
(2층) 철근Con'c조 0.7
(1층) 철근Con'c조 0.7 김진희
가건물(1층) 블럭조 1.6

관계 인	V F	(4)	(경계4/1 시설)	중구 을지로 2가 50 (소사 지점)	1 1 1 1	중구 나중 1U3			중구 남대문로 1가 14	(효지동지점)	중구 태평로 2가 120 (*=리트리카)	(요사장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오양, 신간석 지점)	중구 을지로 1가 101-1 (경복궁역 지점)		중구 태평로 2가 120 (효자동 지점)
o 해	字 字			중소기업은행	(주)동부상호	저축은행			(ス)スから割	(エ)ともたる	(주)신한은행		なるなる	협동 소화	(주)하나은행		(주)신한은행
	格마			근저당권자	ī ī ī	17 20 20 2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7.217,37	나 성 선 수	근저당권자		77177	니 6 6 4 4 4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소 유 자	ĸ ⊢ ≺₁				종로구 효자동 100		ر الم الم الم الم	소노丁 요시당 30~8			종로구 효자동 50-6		አ ተ ከ ከ	승노구 요시당 30~3	광진구 구의동 243-8 B01호	종로구 신교동 51-1	종로구 효자동 61-1
	で で				손진총		3 7 7	<u> </u>			<i>送</i> 次 个		<u>स</u> २ ०	₽ 12 12	바구선	윤상남	변인식
수 교	ξ (jill)	1소	1소	잣	1소	6주	9.0	1소	11.4	9:9	<u> </u>	1.	11.5	8.3	1.0	8.2	10.7
무조 및	T T	철제/슬라브	벽돌조(2.0m)	철재샷타/기둥 (석재붙임)	벽돌조(2.0m)	다 로 프	자	철재샷타	목조/와급	목조/와급	목조/기동 (벽돌스라브)	벽돌조(2.2m)	부동조	벽돌조/와즙	철근Con"c조	벽돌조/성글	벽돌조/와급
동건의	사o 마=	라	다	주차 장출입구	다	사	건물 (1층)	주차장출입구	건물 (1층)	건물 (1층)	판	다	건물 (1층)	건물 (2층)	건물 (1층)	건물 (1층)	건물 (1층)
ر التاريخ	₹	종로구 효자동	20-7	조근소 수지도	100		종로구 효자동	50-23		ユニン ネルエ	9-0S		종로구 효자동	20-2	종로구 효자동 93	종로구 효자동 92	종로구 효자동 61-1
의 판	판	,	0		7		С	0			6		5	PI	II	12	13

관계 인	∀ ⊢									
े	で で で									
	사 마=									
수 야 ·	K -		종로구 효자동 62			강남구 신사동 555-36 3층 505		조리그 소기도 70 0	승노구 용시 <i>승 (3</i> ~3	
	次 码		나왔 건			수		8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마수	
수 교	î î	7.7	77	1소	5주	4.8	8.4	3.8	12.0	1식
	世	를 참 주	목조/슬라브	博돌조(2.5m)		(단콜롱선)	목조/와급	벼돌조(석재붙임)	벽돌조(석재붙임)	철재+목조
물건의	№ п⊨	장 독 대, 보일러실	라	다	사마	건물 (1층)	건물 (1층)	가건물(1층)	화장실,창고	라바
7	소 Æ 돈		종로구 효자동	70		종로구 효자동 74		종로구 효자동	73-3	
의미 포기	판		14			15		7	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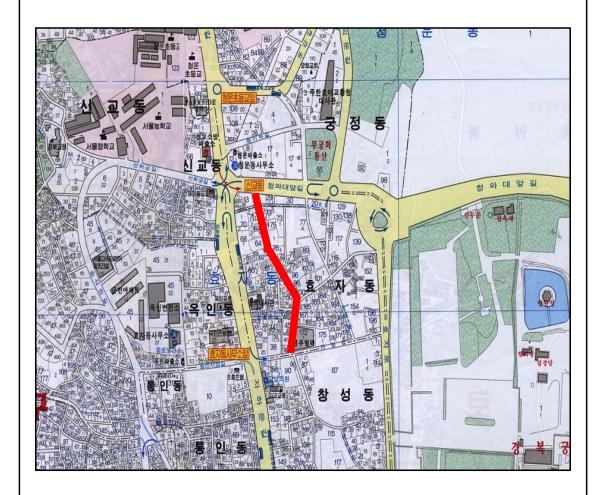
8 업 권 자

O 공 사 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 ·		の部中国の		
T T	ठा ठ्रम ठ	ت ار			=				
√ *	서 ○ 마⊨	수 어 단	F 20	% 。	∀ ⊢ 소₁	k\$0 ⊔⊨	で で	к - <4	
효자동 40-1	잔시시설	실러리 아트다	작.	다 성 구	중로구 효자동 40-1				ı

사업위치도



◈ 광진구공고 제2009-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8-52(2008. 12.18)호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률
- 제90조,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2월5일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 도:정거장)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비고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정거장) ·어린이대공원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	6,114㎡ 중 284㎡	

- 다.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광 진구 구의로 265(화양동 1)]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 시일로부터 16개월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 리명세: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

,	디비											
	к <u>Г</u> <4											
이해관계인	野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유자	사											
토지소유자	晋 ※	구 (국토해양부)	광진구	광진구	광진구	서울시	서울시	국 (기획재정부)	사출시	서울시	서울시	
型。	면 (m²) 전	2	112	83	9	1	33	2	99	5	53	7%
K K	면 (교,	11,104	629	709	10	2	3,277	761	899	1,772.6	1,340	
	<u>서</u>	떠	舌	力皿	力皿	古	더	건	건	1거 1개	건	
	수 쓰 지	군자동 346-42	군자동 374	군자동 374-9	군자동 374-10	군자동 374-18	군자동 374-19	군자동 374-21	군자동 374-35	화양동 164-1	등동 463-6	
	요) 포)	-	2	33	4	D.	9	7	~	6	10	'M

◈ 중랑구공고 제2009-8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

- 1.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중화동 208-38~208-1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본 열람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로과(전화:490-3405~9, 전송 490-3708, http://jungnang.seoul.kr)에 의견제출 및 문의바랍니다.

2009년2월5일중랑구청장

가. 열람장소 :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 과

나. 열람기간 : 2009. 2. 5 ~ 2009. 2. 25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 일 자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 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8-38~208-16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중화동 208-38~208-16간 도로개 설공사 	B = 8m L = 70m	인가일로부터 2009.12.31까지	서고 제18호 (*07.01.25)	서고 제18호 (´07.01.25)	중 랑 구청장

- 라.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9조에 의함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소 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불임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따로붙임

₹ ĸł $\overline{\mathsf{K}}$ 뻐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08-38~208-16간 도로개설공사

	ㅋ	
선무	송 두	
관계인	사 선	
	왕	
수 유 자	٢ ⊢ 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8
	성명	사 일 수 수 수 수 수
년 인교	면적(m²)	89
지장	(m³)	1024.8
<u> </u>	<u> </u>	Κ⊢
소재지	기면	중화동 208-11
2m 꼬기	판	П

₹ ĸ 糽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08-38~208-16간 도로개설공사

	더			
	垣			
	소유권의 권리명세			
이해관계인	ĸ ⊢ 〈쉬			
	晋° 平°			
소휴자	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8	
	形 ぞ		동일석유 구식회사	
五 五		15	15	14
	= t - < k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발로 구구
된 지 의	n k40 n⊨	건물 (1층)	건물 (2층)	다장
	<u>서</u> 파		중화동 208-11	
,	요) 포)			

항북구공고 제2009-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1.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 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일반 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내 강북구청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2월5일강북구청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규 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н) п
ं भिन ठेम हे उठ	위 치	1	지형도면 고시	비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	강북구 수유동 570-18~576-48	폭원 : 5 -/6 m 연장 : 150m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72.7.1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유동 400~447간 도로확장)	강북구 수유동 400-6~447-4	폭원 : 5 -/6 m 연장 : 145m	서울시고시 제89('72.7.1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강북구 수유동	폭원 : 3 -/6 m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1.18)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10.24)	
(수유동 534~535간 도로확장)	535-39~534-3	연장 : 160m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1992-26('92.7.30)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 시일 $^{\sim}$ 2010. 12. 31.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 권리 의 명세: 별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과(전화 901-58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디뉴										
	사 라 아 아				근저당권						
[o] [k]					수리은행						
京家					중구 남대문로27111-1						
	声	한수수	송건설	송건설	유경자	한 신 아	동방생명 보험(주)	삼성생명 보험(주)	동방생명 보험(주)	김재룡	바부드
수 #	÷	장북구 수유동318 - 3	장북구 수유동519-21	강북구 수유동519-21	강북구 수유동240-21	강북구 수유동318-3	중구 충무로1가52-5	중구 태평로2가150	중구 충무로1가52-5	서대문구 대조동79-8	종로구 신문로2가1-124
· ·	수 보									1/2	1/2
(전)	(대 (메)	256	98	88	14	2	89	4	3	T	-
7	(때)	256	36	28	14	2	89	4	3	-	-
	전	버	五	舌	五	五	古	五	计	ī	[π
7	소 도 ^ጁ 고 코	수유동 318-10	수유동 323-11	수유동 323-15	수유동 323-16	수유동 318-12	수유동 318-16	수유동 260-153	수유동 318-6	수	268-47
	땅	П	2	3	4	rC	9	7	~	c	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비고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공사 사 라 라 라 で で 솔 F #J ক 0 \prec 4 ĸ⊢ 박주원 否 ಞಂ 六 강북구 수유동 273-38 ৽⊨ \prec 4 \prec 4 $\mathsf{K} \vdash$ 유 루 파 小。 (m_i) $\frac{1}{2}$ 지 스라브/벽돌 子 京 京 河

왕 왕 휴

水 単

소 지

영

华

수유동 273-38

 $\overline{}$

창고

쁖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수유동 400~447간 도로확장공사

7 7	거	수유동 400-7호 에서 분할	수유동 400-10호 에서 분할	수유동 400-15호	수유동 401-10호 에서 분할			수유동 401–11호 예서 부학	= - - - - - 1		수유동 401-16호 에서 분할	수유동 401-17호 에서 분할	수유동 403-2호 에서 분할
	사 라 라 왕			근저당권	근처당권			근저당권			근처당권		
이해관계인	∀ ⊢ ≺ 4			중구 을지로2가 50(수유동지점) 조그 ㅇㅋㅋ?가 50(스 ㅇ 도 ㅋ ਸ਼)	8등포구 여의도동 60			종로구 관철동 43-8			중구 남대문로2가 130(종로3가 지점)		
	形 %	ı	ı	기업은행	기립는 8 대한생명보험			한국주택금고			찬일은행	ı	ı
소유자	선	장북구 미아동 &1-9	강북구 수유동 451-149	강북구 수유동 <i>2</i> 70-139	장북구 수 유동 401-10	중구 장교동 23	성동구 사근동 22	중구 필동2가 84	중구 필동3가 62	중구 필동3가 62	장북구 수유동 401-16	장북구 수유동 401-16	장북구 수유동 <i>4</i> 72-515
	平 平 平	서순자	한국기독교 장로회송암 교회	강정미	<u>송</u> 왕	김정확	라이워	이정춘	박대주	박순동	<u>송</u> 다	박일순	빠대섭
유	大 計	ı	ı	1	1	1/5	1/5	1/5	1/5	1/5	ı	ı	ı
五 2 2 2 1 2 1 3	₹ ÎE	31	12	32	15			2			15	2	9
K K	(m²)	350	539	202	218			139			106	83	179
1	<u> </u>	亏	舌	舌	雪			다. Fu			舌	다. 대	舌
수째지	기관	수유동 400-54	수유동 400-55	수유동	수유동 401-63			수 유 1 1 2	TO TO!		수유동 401-65	수유동 401-66	수유동 403-29
으마 - 포기	판		2	3	4		-	5		-	9	7	∞

五	수 조교 지	ļ	전 전	함	유		소유자		이해관계인		
함	는 된	<u> </u>	(III ₃)	다. (july 1977)	전 파	で で	۷ ۱ ۲۹	平°	Κ Ի	원리의 내용	건 ㅠ
6	수유동 447-30	否	189	2	ı	क्रुधा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8-308	I			수유동 447-1호 에서 분할
	수 유 자	Έ	77.	Ç	1/2	안창도	강북구 수유동 553-61 극동아파트 2-1202	기오 6 巡	중구 을지로2가 50(수유역 지	7272	수유동 447-3호
OT .	447-26	5	C/1	OI	1/2	강미자	강북구 수유동 553-61 극동아파트 2-1202	الله الم الم	29)	1 <u> </u>	에서 분할
-	수유동 447-29	다 다	09	2	ı	이정택	강북구 수유동 125 <i>-7</i>	ı			수유동 447-15호 에서 분할
12	수유동 447-28	亏	126	14	ı	소 82 1월	강북구 수유동 447-16	ı			수유동 447-16호 에서 분할
13	수유동 447-27	音	102	19	I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광교회	강북구 수유동 447-18,19	ı			수유동 447-18호 에서 분할
14	수유동 605-510	크	9	9	ı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192-59	1			L

	535간 도로확장공사		건 금						수유동 535-39호	에서 분할					
	357 Es		는 의 의 아 아		근저당된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동기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제당권
	수유동 534 ~ 5	이해관계인	서		중구 남대문로2가9-1 (수유서지점)	중구 남대문로2가9-1 (월곡동지점)	중구 충정로1가 75 (수유치점)	송파구 신천동11-6 (공릉동지점)	중구 남대문로2719-1 (미아동지점)	노원구 상계동112-43	성북구 돈암동580-3	도봉구 창동814 대우그린@105-1501		의정부시 의정부동200-13 (도봉지소)	강북구 수유동383-6
र			罗ぞ		국민은행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민은행	임양의	북악세마을금고	김영환		양주축산업협동 조합	강북새마을금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유자	ν <u>⊢</u> ≺₁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잡빌라 101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갑빌라 102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갑빌라 103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갑빌라 201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갑빌라 202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갑빌라 203호		장복구 수유동 535-39 오 <u>잡</u> 빌라 301호		은평구 역촌동 32-11 대성빌라 401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잡빌라 비01호	강북구 수유동 535-39 오잡빌라 비02호
			晋º ぞº	바자	정애자	이건주	연 상 대	남기색	令多		상혈경		이대회	김경숙	김영구
		유	거	46.18	46.58 /552	45.26 /552	46.18 /552	46.58/552	45.26/552		92.68/552		45.26/552	46.18/552	46.58/552
		표 연 연 성	₹ (E)						7	2					
			(m ²)						16	24					
			<u> </u>						古						
		소재지	기면						수	535-371					
		2m 꼬기	짬							+					

ī	7				수유동 535-40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41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42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269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159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27호 에서 분할
	는 라 아 아 아	가증기권	가압류	근저당권	근처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처당권				근저당권
이해관계인	사	도봉구 창동 667-58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71-2	중구 남매문로2719-1 (주택신림역지점)	도봉구 %문동 619 (창동지점)	도봉구 %문동 619 (창동지점)	중구 을지로2가 50(군차남 지점)				중구 충정로1가 75(수유지점)
	平°	o 왕	화도상업협동 조합 조합	국민은행	북서울농업협동 조합	북서울농업협동 조합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 아희
소유자	Κ <u></u>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마북동 625 교동마을 현대필그린@110-103호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104-102호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104-102호	강북구 수유동 540-12 금호빌라 102호	도봉구 방학동 272-1 신동아@ 20-907호	상북구 수유동 535-159	강북구 수유동 535-29	강북구 수유동 535-27
	平 平		요 원 건		년 8월 1년	선 해 슈	것 다 야	권순석	박영태랑	심영민	수 환 환
o⊧ 140	저		45.26/552		ı	ı	ı	ı	ı	ı	ı
표 2교 4	라 (jm) 화 (jm)				П	16	П	33	18	17	5
K K	(m _j)				П	16	-	33	18	17	5
1	<u> </u>				亏	亏	音	버	否	五	급
수째지	기반				수유동 535-372	수유동 535-373	수유동 535-374	수유동 535-375	수유동 535-376	수유동 535-360	수유동 535-377
으마 또가	전				2	က	4	5	9	7	8

T	= = = = = = = = = = = = = = = = = = = =	수유동 535-118호 에서 분할	수유동 535-26호 에서 분할			
	권리의 내 용	I	다지당권	압류	하는	
이해관계인	κ⊢ ∢4	ı	종로구 광평동 100 (삼양동지점)			
	型° %°	ı	(주)제일은행	강북구 (세무과)	상당	
소유자	κ <u></u> - 소1	강북구 수유동 535-118	강북구 수유동 535-26	9-801 국학산 스타미국	0 001 0 0 0 171 0	
	平 平	きる。	바 구 구 스	(주)한전 주택		
다 ()	본	ı	ı	ı		
明る	.t.⁴. (m²)	3	68	83		
K K	(m³)	3	68	33	3	
7 7	r	古	否	晉	7	
수 윤 고	전	수유동 535-378	수유동 535-379	수	535-333	
2m 꼬기	전 씨	6	10	11	=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를 함 함

수유동 534~ 535간 도로확장공사 더 П 근처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선 구 송 서울수유협동 조합 조합 중소기<u>압</u> 은행 (주)제일 은행 呼 ফ্ 이해관계인 중랑구 상봉동 137-7 (수유지점) 종로구 공평동 100 (삼양동지점) 중구 을지로2가 50 (군자남지점) \prec 4 ĸ⊢ 동찬호 소근욱 박춘학 권해수 呼 ಞ 강북구 수유동 540-12 금호빌라 102호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 오@104-102호 소유자 장복구 수유동 535-26 장복구 수유동 535-31 个个 상하 **☆**。 (Ⅲ,) 낏 19 84 3 17 9 \sim 2 세멘부로크조 세멘부로크조 세멘벽돌조 세멘벽돌조 구조 및 규격 물건의 종류 보일러실 주차장 걵물 건물 창고 건물 차고 건물 창고 건물 수유동 335-41 수유동 535-42 수유동 535-26 소계지 기번 수유동 535-31

3

4

2

◆ 구로구공고 제2008-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 가를 위한 열람

- 1. 전교부 고시 제137호(1977.7.9)로 도시계 획시설(도로)결정되어 구로구고시 제 2008-63호(2008.9.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주변(창조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합니다.
-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 소(구로구청 도로건설과 ☎860-3124)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 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 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등 미수령자에 대 하여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초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8-4~188-33
- 변경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8-4~188-33 및 같은동 1124-85 외 1필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주변 (창조길) 도로확장공사
- 라. 사 업 규 모 : 도로확장 폭20→30m, 연장290m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길340 (구로동 435번지)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

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사. 열람공고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 터 20일간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 임

	3	ì,	١
c	5	Ū	
-	_	_	

く く く く	ㅇ 사 업 시 행 자:구로구청장 ㅇ 사 업 의 명 칭:한국산업단	·· ·· 다 龄	2구청/ 1산업	지광단주	(창조길)	변(창조길) 도로확장공사				
2m 班7	4 ام ام الم	7 1	로 일 일 기	설		소 후 자	<u> </u>	이해관계인	수 유 유 교	면
쩐	아 스 스 스 스 스 스	<u> </u>	E (E	이용상황	次 远	∀ ⊢	平°	κ⊢ ≺ન	권리내용	(모지번)
1~20						변경사항없음				
					김창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65-1				
					김낙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0-906				
21	구로동 1124-85	舌	27.3	다기	이한선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아파 트 204-1003				
					김혜리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아파 트 204-1003				
					김창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65-1				
83	구로동 1124-86	舌	12	다	김낙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0-906				

₹ Kł 지

	도로확장공사	실제
	변(창조길)	
,	지광단주	[D X]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주	<u>п</u>
动 斗:	·· 。 。 。	ارالا.
সু <u>ন</u>	ত মুম	~
\rangle \sqrt{\sqrt}	0 1	Т О

소재지 불건의 구조 및 수량 이용 지 번 중 류 규격 수량 이용 성명	0 8 1 1 1 1 1 8 1 1 8 1 8 1 8 1 8 1 8 1	
1.4		



◆ 관악구공고 제2009-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 완료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07-28호(2007. 08.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공고)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80-36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2월5일관 악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관악구 미성동(구 신 림12동) 산124-6번지 등 42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명칭 :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3. 면적 및 규모: 11,961 m²

4.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가) 시행자 : 관악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
- 5. 사업기간 : 2007년 08월02일~2008년 12월 31일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 년 월 일가) 사업착수일: 2007년 12월 27일나) 준공일자: 2008년 12월 30일

★ 서초구공고 제2009-103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 안을 위한 열람

서울 서초구 「테헤란로 1지구(서초로)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도시계획)시 설(공공청사 :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제22조 및 「서울특 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 초 구 청 장

- 1. 입안사유: 서울 서초구 「테헤란로 1지구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 초동 1707-4호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 청사: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을 결정함으 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업 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테혜란로 1지구(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최초	비고
1 4	기 큰 '0	기원에 세한	71 71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H 17
신설	공공청사	법원	서초구 서초동 1707-4	-	(증)4,784.20	4,784.20	-	서울중앙광역 등기국

3)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건축물의 범위		최초	비고
1 년	(기교)	세분	71 /1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일	11 12
신설	공공청사	법원	서초구 서초동 1707-4	60% 이하	200% 이하	7층(28m) 이하	-	서울중앙광역 등기국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사항: 변경 없음

-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4.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초3동 주민센터(☎02-2155-7463)
- 5.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 6. 의견서 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공고 제2009-120호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1999-244호(1999.8.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강남구 고시 제2008-29호(2008.4.24.)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강남구 일원동 산56번지 일대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 로 갈음합니다.
- 3. 관련내용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2월5일강 남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 원동 산56번지 일대
- 2)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 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대모산도시자연공 원 조성
- 4)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280,761 m² → 238,671 m² (감 42,090 m²)
 -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5) 사업기간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0. 12. 31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열람 시간 09:00~18:00)
- 다.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2104-1916)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
\overline{K}
뻐
鄗
여
⇉
_
버
0‡0
仆
УL

		년				를 된 의 전	ツ (産			
		수 유 명 명 명 명 교 교 교 교 교 교								
	이해관계인	∀ -								
	0	形 灭°								
면정수	수 약 수	ν⊢ <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서대문구 대조동 179-14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메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메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이재환 서대문구 대조동 179-14	동대문구 제기동 679
		平º 下º	류석기 (학	(a) (b) (c) (c) (c) (c) (c) (c) (c) (c) (c) (c	후 작기	상이	次 分 子 上	상 상 상 성 스 성 스	0 學 上 少	이이수
	(m²)	超 2 _五			•	18,000			64,926	•
	지적(m²)	바	78,826 78,826			060'09			64,926	
		수 이 의 등 등 의 의 교 등 등 의 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이해관계인	∀ +								
전		形 灭°								
TP 97	소하자	HO 전	경기 현대아파트 24-1402	이재환 179-14	유석기 현대아파트 24-140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인옥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강형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강형석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이재확 179-14	이익수 동대문구 제기동 679
-		편 교 2	78,826 류석기	0	oÈ	060'09		<u> </u>		_
	지적 (m^i)	바 바 때 때	78,826 78			060'09			900	04,920 04,920
			일아 78			09 선생				ま
		과 면 지							강남구	
		원 전 소 조 조 표	강남구 일원동 산63-36	강남구 일원동 산32-10					700	

		T- H								
		소유 원일 생리 명소 교육			7년류	의 나 나	768류	가압류	764류	가압류
	이해관계인	∀ -			마포구 공덕 동 254-5 (강남지점)	마포구 공덕 동 254-5 (광고지점)	부산 중구 중 앙동 4가 17-7(서울지점)	강남구 대치 동 1009-5 구 가압류 상빌딩 3층	중구 남대문 로2가 9-1 (성동지점)	강남구 논혁 동 199-2 (여신관리부)
	Ü	平°			신용보증기급	신용보증기급	기술신 용보증 기급	주식회사 신도캠 퓨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수 살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그 그
변 경 후	소유자	κ⊢ ∢ł	성북구 정능동 178-75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도봉구 방학동 271-4 신 동아아파트 29동 109호		
		下 下	총성은	유색기				장 수 수		
	(m²)	<i>료</i> 기 으ュ		1						
	지적(m²)	파								
		수 의 취 등			가야류	0) 다 다	가야류	가함류	가압류	가압류
	이해관계인	ν⊢ ≺ન			마포구 공덕동 254-5(강남지점)	마포구 공덕동 254-5(광교지점)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서울지점)	강남구 대치동 1009-5 구상빌딩 3층	중구 남대문로2가 9-1(성동지점)	강남구 논현동 199-2(여신 관리부)
전		五 元			신용보 증 기급	신용보 증 기급	기술신 용보증 기급	수수 설로 유도검 파타	사 철 수 시 사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수 수 수 다 다 하고 수 수 수 수 수 수 다 다 다 하고 수 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电多名	소유자	∀ ⊢ ≺ł	성북구 정능동 178-75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u> 수</u> 801		
		₹9 E9	총성인	유석기			64,926 정동수			
	지적(m²)) 일 -					64,926			
	지적	파					64,926			
		포					음아			
		소 시 시 년					상남구 일원동	ر بر		
		과 퐈					33			

		교								
		수 유 명 명 명 명 교 교 교 교 교	유 유 교	다 유 생	다 하 하	가처분				다 무 기
	이해관계인	ν⊢ ≺4	성북구 돈암 동 2-86 영화 연립 씨-204	군포시 금정 동 689-6 한림벤처타운 501호	중구 충무로3 가 56-1	용산구 보광 동 220-1				처분청: 강북 도봉로 117 (미아 317-5) 도봉세무서
	Ü	下 下	신길자	주식회사 소스텔	주식회사 한빛아트	김의수				국가 (대한 민국)
변경 후	수 유 자	ν⊢ ≺4		7	, , ,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도봉구 방학동 271-4 신 동아 아파트 29-109
		天 ₀					소인	次 於 不	강형석	장 수
•	(m²)	<i>편</i> . 으=								
	지적(때)	파								
		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유지	다	는 지 기 기	가처분				는 무
	이해관계인	ν <u>Г</u> <4	성북구 돈암동 2-86 영화연립 씨 -204	군포시 금정동 689-6 한림벤처타 운 501호	중구 충무로3가 56-1	용산구 보광동 220-1				처분청: 강북 도봉 로 117(미아 317- 5) 도봉세무서 (3세과)
정		で で	신길자	주식회사 소스텔	주식회사 한빛아트	김의수				국가 (대한 민국)
用る	소 유 자	ν ⊢ ~4		도봉구 방학동 271-4 신동아아파트 29동 109호	1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메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도봉구 방학동 271-4 신동아 아파트 29-109
		形 で		조 구 구			상	次 子 多	강형석	장 사
	(m²)	<i>료</i> 2 <u>.</u>					64,926 64,926 이인옥	,		
	지적(때')	파					64,926			
		전					입아			
		소 소 유 교					강남구 일원동 소등 50-9			
		ਲਾ ਸ਼ਾ					က			

		년								
		수 수 성 성 실 성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실	7압류	가압류	아르	다 다 다	다	다 유 본		
	이해관계인	к ⊢ ∢ł	마포구 염리 동 24-100	광주 북구 신 안동 2-9	강남구 학동 로 426 강남 구청(세무1과)	도봉구 방학 제1동 707~6 KT 방학지점 4층(자격 징수부)	도봉구 방학 동 720 도봉 구청(징수과)	성남시 분당 구 정자동 110 한솔마을 106-1502		
	J	天o 王o	바동관	啡 화수	강남구청	국민건 강보험 광단도 봉지사	도봉구왕	や か が		
면정수	소유자	ĸ ⊢ ∢ł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미합중국 캘리포니이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u>た</u> 品。							# 4기	이인수
	지적(m³)	원								62,883
	XX	파								62,883
		수 수 성 성 성 성 선 성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가압류	가압류	아르	الم الم	바	다 사 아무		
	이해관계인	∀	마포구 염리동 24-100	광주 북구 신안동 2-9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세무1과)	도봉구 방학제1동 707-6 KT 방학지 점 4층(자격 징수부)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징수과)	성남시 분당구 정 자동 110 한솔마 을 106-1502		
倒		天o 王o	바동관	박 화수	강남구청	국민건 강보험 공단도 봉지사	도봉구청	か か ふ ふ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k ⊦ ∢ł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4-140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F키트 116
		天o 王o							유석기	이인수
	지적(때)	<i>료</i> 기				64,926				62,883
	Po 2									62,883
	유							취하		
		소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강남구 일원동 산32-9			강남구	일원동 산52-1
	87 원 명							4		

		디				수 로 로			수 로 유	i
		소유 원 원 의 생리 교체								
	이해관계인	KF <4								
	O	于0 下0								
변 경 후	소유자	k- 석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4 쌍용빌라 비-203		강남구 개포동 660-1 주 공아파트 1동 307호	이선표 강남구 일원동 434-2		
		平°	25. 4. 4. 4. 4. 4. 4. 4. 4. 4. 4. 4. 4. 4.	2 ⁸ 설	강태원	사울트 별시	平中	이선표	사 환 교 교	- J -
	지적(때)	<i>코</i> 기				27	134	155	1002	
	XX	마				27	134	155	1002	
		수유 원 등 일 명 급 교 교 교							아 나 나	다 전 전 편
	이해관계인	κ ⊢ ≺₁							처분청:송파구 풍납2동 388-6 강동세무서(세원 관리3과)	성남시 중원구
전		<u>た</u> 。							국가 (대한 민국)	中多型
电多	소유자	∀ ⊢ ≺ł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메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4 쌍용빌라 비-203	중구 태평로2가 150	강남구 개포동 660-1 주공아파트 1동 307호	155 이선표 강남구 일원동 434-2	1002 서정숙 강동구 천호동 466-5	
		平 下	강형주	강청소	강태원	삼성생 명보함 주스 회수	는 건 윤	이선표	소 8~ 수~	
	(m²)	표) 으=		62,883	1	72	134	135	1002	
	지적 (m^i)	마		62,883		77	134	135	1002	
		K 타		10 D		소	다	전	☆≖	
		소 지 면 면		상담구 일원동 상52-1		강남구 일원동 346	강남구 일원동 347	강남구 일원동 349	상남구	000
		와 퐈		4		5	9	7	∞	

		년			보 유 교			
		수 의 의 분 등 교육 교육			., ,			
	이해관계인	∀ ⊢						
		で で で						
변경 추	소유자	κ⊢ 소	서초구 서초동 1444-7 백경삼 서초4차우성아파트 102 동402호	양천구 신정동 326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220동 601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平°	백경산	及 今 品	사용 투별시	아이	次 个 条	22 8 4 4
	지적(때)	<i>보</i> 가 으ュ	0.00	2048 8	506		2600	
	K	파	Of Oc	849 84	306	2332		
		수 유선 원의 생리 교육						
	이해관계인	κ⊢ ∢₁						
전		平º 下º						
軍	소유자	κ⊢ ≺4	시초구 시초동 1444-7 백경삼 서초4치우성아파트 102 동402호	양천구 신정동 326 목 동신시가지아파트 1220 동 601호	중구 태평로2가 15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天 ₆	백경삼	次 今 品	삼성생 명보함 수소 스스	아이	2600 강형주	강형석
	(m²)	<i>보</i> 기 으ュ		9465 8	200			
	지적 (m^i)	파	04	8648 8	206		5332	
		전	4	<u> </u>	아마		10 D	
		수 도 윤 고 코	강남구 1995	^{일원} 수 산56	강남구 일원동 신57		강남구 일원동 산63~35	
		와 판		ת	10		11	

		石田田						
		수 유 명 명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 해관계인	ν ⊢						
	0	平° 下°						
변 경 후	소유자	κ⊢ 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平° ~	아이	で め スト	2. 청소	수이	<u>た</u> 水上	강형석
	지적(때)	<i>라</i> 으=		3025			3239	
	지작	마		3025			3239	
		수 유 원 생리 교 교 교						
	이해관계인	κ⊢ ∢4						
전		晋 ⁰ で						
변경	소유자	κ ⊢ 소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메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테일시 428 하톤스 트리트 116
		予 %	수	3025 강형주	강형석	이아	3239 강형주	강청소
	(m²)	교 연구						
	지적(m²) 광부 평			3025			3239	
		전		유하			임아	
		소 도 <u>독</u> 면 표		강남구 일원동 산63-37			강남구 일원동 산63-38	
		ਲਾ ਸ਼ਾ		12			13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빈	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어 가 연월일		
(주)유신코퍼레 이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40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고무보트 1, 작업대1)	대곡~소사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 및 수심측량에 따른 선박운항	2009. 2. 1. 2009. 3. 31.	2009. 1. 29.		

사업소공고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2009-7호2009 유기질비료 공급가격

우리사업소에서 생산된 양질의 유기질비료 공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 1. 공급대상:서구(1-25) 및 공공기관
- 2. 공급내용

○ 품 명: 유기질비료

○ 규 격: 15kg○ 공급가격: 3,000원

- 주 성 분 : 질소0.54%, 인산0.34%, 카 리0.08%, 칼슘0.01% 마그네슘0.02%, 유기물16.41%, 수분59.2%, 기타23.4%
- 3. 공급조건 : 현장상차도(운반, 하차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 조경과(500-754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미술관공고 제2009-1호 소 장 작 품 구 입

2009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작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 1. 구입대상작품
 - O 한국미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작고 작 가의 작품
 - O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과정 중 주요한 사조, 운동, 경향에 지대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주요 대표 작품

- O 역량 있는 신인과 최근 주목받기 시작 한 청년작가의 작품
 - 한국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 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작품
 - 2009년 시립미술관 기획전 출품작 (예정작 포함) 중 우수작품
- 2. 참가자격: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관련자, 작품을 매매하는 개인 및 법인 등
- 3. 신청기간 : 2009년 2월 9일(월)부터 2009 년 2월 27일(금)(17:00)까지
 - * 신청기간 이 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4. 신청방법 : 직접방문(10:00~17:00) 또는 우 편접수
- 5. 신청장소 :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미 술관길 30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
- 6. 신청서류
 - (1) 작품매도신청서 (소정양식: 홈페이지 에 등록되어 있음) 1부
 - ※ 사진, 판화, 조각 작품의 경우 : 비 고란에 에디션(Edition) 명기
 - (2)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사본 1통
 -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4) 작품 사진 각 1매 별첨된 서식에 사 진 부착
 - (5) 작품 이미지 파일(jpg) 1개
 - 이미지 파일(jpg)을 CD에 저장하 여 첨부하거나,

- 서울시 웹하드 시스템에 이미지 파일(jpg) 게재

※ 게재방법

- 주소 http://webdisk.seoul.go.kr
- ID : collection, 비밀번호 : 2009
- 게스트아이디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 내 웹하드 시작하기 웹탐색기 클릭
- 업로드전용 폴더 클릭
- 매도 신청자명으로 폴더 만든 후, 이미지 게재
- (6)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자료 : 작가 이력(생몰년도 명기), 전시 도록 등 7. 구입작품 선정 작품수집추천회의, 가격평가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립미술관작품수 집절차에 의하며, 구입 작품으로 선정된 경 우 개별 통지



구입대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8. 가격결정 : 가격평가위원회 평가금액에 【별첨】1. 작품매도신청서
-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함
- 10. 소유권이전: 작품매매약정 체결 후 작품 의 미술관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 품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전됨
- 11. 기타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02-2124-8960)로 문의

2. 작품 사진 부착 서식

				작	품 마	l 도	신 청	서			
접수	·번호	:	2-1 1-1				スロロ	: 근 i) -	<u>-</u>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배도신 [:] 인적시		전 화				부재 시 연락처		처		
			주 소						'		
	매 도 신 청 작 품 목 록										
연번	부문	작가명	작 품	명	제작 년도	크기 (cm)	재료 및	기법	소장처	요구액 (단위:원)	비고
1 0	일 이 그	나이 서우	 .트병 시 리 미	수라 의	しはスさ	l 레 제99:	 ス	시해규] 최 제10:	 조에 의거 신] 처
		: 기 시 글]출합니다		근간신	. 01.	11 11/2/25	工 天 0 ′	7 -0 11	7 /110	エ	1.0
2. 4	의 작품	은 장물	또는 위작((偽作)。	이 아닐	님을 확업	일하며, 면	<u></u> 약 장	물 또는	위작품(僞作	品)
			에는 민ㆍ								
3. 4	위 작품	등 중 매도	도작품으로	선정도	기지 않	:은 작품	은 즉시	회수히	가겠습니	다.	
					2009	년	2월	일			
	매도신청자 (인)										
				ᇩ	트비기	리미스	관장 귀	ર્ ટો.			
				시된	<u> </u> 무밀시	됩니도	でる T	۷r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년도	규 격 (단위 : cm)	
재료 및 기법	매도희망가격 (단위 : 원)	

※ 사진 부착 ※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9-02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 은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동대문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전기분야)	제동대문2009-1호 (2009.01.28.)	태화전기 (204-14-82028)	김 수 규 (1959.05.05.)	동대문구 휘경동 49-5 가든아파트 상가2호	☎ 02-2244-6490

※ 문의전화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9-03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

은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동대문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제동대문2009-2호	주식회사 장수플랜트	한 병 용	동대문구 이문동	25 02-957-8805
공사업	(2009.01.28.)	(110111-3096016)	(1958.06.06.)	257-290	

※ 문의전화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

항 강서소방서공고 제2009-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강 서 소 방 서 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강서 2009-1호 (2009.02.02)	(주)이십일세기 종합방재	오 용 기 (631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0-12 우성B/D B동102호	02)1588-0619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강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02-3661-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9-4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강남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및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강남2009-2호 (2009.01.28)	동부씨엔아이 주식회사	김준기 (441204~******) 조영철 (460426~******) 이 봉 (500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4-17	2136-6100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9-7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강남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및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제강남2009-3호	주식회사	김 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3448-1119
공사업	(2009.02.02)	지안소방	(691014-*****)	515-6 대영빌딩 303호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9-9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

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09년 2월 5일 강남소방서장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울강남 2009-1호	소방시설 관리업	주식회사 진우방재	박진선 (54110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1 대종빌딩 203호	2009.2.2

※ 자세한 사항은 강남소방서 예방팀(☎:02-561-2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서울시보 제2888호(2009.1.29) 114쪽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09-65호를 다음 과 같이 정정 게재함

<정정전>

◈ 종로구공고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2006.04.13)호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 안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의거 종로구공고 제 2008-800(2009.01.02)호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돈의문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돈의문3구역 도시환 경정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재정비추진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1월29일종로구청

가. 공람기간 : 2009.01.29 ~ 2009.20.12(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

다.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조서

1)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m²)	비고	
丁七	143	71/1	시행면적	대지	공공용지	비포
기정	돈의문3구역	종로구 평동	8,874.3	6,769.4	2,104.9	의주로 확폭에 따른
변경	는의단이 되	222번지 일원	8,874.3	6,405.8	2,468.5	공공용지(363.6m²)증가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1 正	기정	증(감)	변경	1/841(70)	비北
합	계	8,874.3	-	8,874.3	100.0	-
택지	계	6,769.4	감)363.6	6,405.8	72.2	-
(획지)	상업·업무	6,769.4	감)363.6	6,405.8	72.2	_
정비	소계	2,104.9	증)363.6	2,468.5	27.8	-
기반	도로	1 001 0	증)368.3	2.250.2	26.5	의주로 확폭에 따른
시설	工工	1,981.9	5 /300.3	2,350.2	20.3	면적(368.3m²)증가
시설 등	공공공지	192.0	감)4.7	110.0	1.0	의주로 확폭에 따른
9	0001	123.0	台/4.7	118.3	1.3	면적(4.7㎡)감소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면적	계획대지	계획공공용지			기존공공용지		비고	
一丁七	干型也件	세획내시 	소 계	도 로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비끄	
기정	8,874.3	6,769.4	2,104.9	1,981.9	123.0	1,562.3	1,562.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변경	8,874.3	6,405.8	2,468.5	2,350.2	118.3	1,562.3	1,562.3	면적(363.6㎡)증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규 모			기능	연장	위	रे	사 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8	(m)	기 점	종 점	형 태	비끄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징ㅇ
변경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368.3m²)

○ 공공공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²)			धो न
		명 칭	세분류	Π Λ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 이하 생략

<정정후>

◈ 종로구공고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2006.04.13)호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의거 종로구공고 제 2008-800(2009.01.02)호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돈의문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 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재정비추진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01.29 ~ **2009.02.12**(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

다.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조서

1)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m²)	비고		
10	1 4 7	11/1	시행면적	대지	공공용지	비┸	
기정	도이 묘이고 여	종로구 평동	8,874.3	6,769.4	2,104.9	의주로 확폭에 따른	
변경	돈의문3구역	222번지 일원	8,874.3	6,405.8	2,468.5	공공용지(363.6m²)증가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기. 님		면적(m²)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T/8 (1(%)	HIT	
합 계		8,874.3	-	8,874.3	100.0	-	
택지	계	6,769.4	감)363.6	6,405.8	72.2	_	
(획지)	상업·업무	6,769.4	감)363.6	6,405.8	72.2	_	
정 비	소계	2,104.9	증)363.6	2,468.5	27.8	_	
기 반 시 설	도로	1,981.9	증)368.3	2,350.2	26.5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8.3㎡)증가	
무	공공공지	123.0	감)4.7	118.3	1.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4.7㎡)감소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면적	계획대지	계획공공용지			기존공공용지		비고	
17	기 위원석		소 계	도 로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비끄	
기정	8,874.3	6,769.4	2,104.9	1,981.9	123.0	1,562.3	1,562.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변경	8,874.3	6,405.8	2,468.5	2,350.2	118.3	1,562.3	1,562.3	면적(363.6m²)증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규 모				기능	연장	· 위치		사 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0	(m)	기 점	종 점	형 태	비끄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증
변경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368.3 m²)

○ 공공공지

	7. 11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²)			मो त
	구 분	명 칭	세분류	1 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4-6 번지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 이하 생략